ROKA

육군인력획득Q&A

2026

육군인사사령부
ROKA Personnel Command

202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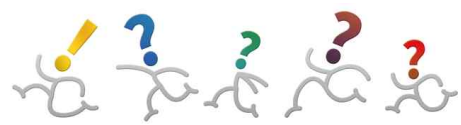

육군인력획득 Q&A

발 간 사

‘육군의 미래를 여는 힘! 인사사령부’는 육군의 인재(人才, Human Resources) 관리책임 기관으로서 ‘**강한 육군, 신뢰받는 육군**’을 구현하고, 「자랑스러운 육군」, 「매력있는 육군」,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을 건설하기 위한 사람 중심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기 위해 전 구성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육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북·러 연대 강화, 미·중 전략경쟁 심화, 러-우 전쟁 장기화 등의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와 병력자원 축소, 청년 세대의 가치관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한 초급간부 획득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사사령부는 각급 제대 지휘관, 인사실무자, 인력획득담당관 등과 합심하여 육군 간부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육군의 비전과 역할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간부 모집 및 선발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는 육군의 리더를 모집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변경되고 있는 획득업무 관련 규정을 알기 쉽게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체계가 미흡하여 야전부대 인사실무자들이 획득업무 추진간 발생하는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획득업무 관련 자주 문의가 되는 내용을 토대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 Q&A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자가 ‘국가방위의 중심군! 육군’의 리더를 꿈꾸는 우수인재를 획득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각급 제대 지휘관 및 업무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육군의 리더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올바른 길잡이가 되길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육군인사사령부 인력획득처장 이사관 성 낙 정

Contents

발간사 3

목 차 4

제 1 장. 간부모집 공통 분야 19

Q&A 1. 모집 분야 21

Q.01 장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나요? 22

Q.02 부사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나요? 27

Q.03 타군(공·해군) 사관학교 퇴교자가 육군 장교 지원이 가능한가요? 31

Q.04 부대 및 지역을 선택하여 근무가 가능한가요? 31

Q.05 임관 후 자기개발 여건이 보장되나요? 31

Q.06 이중국적자는 장교 · 부사관 지원자격이 되나요? 32

Q.07 의무복무 만료 전 전역이 가능한가요? 33

Q.08 장교 · 준사관 ·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33

Q.09 학군사관(ROTC)과 학사사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34

Q.10 타군(해군 · 공군) 과정에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34

Q.11 징병검사를 받았는데 장교 및 부사관 지원시 또 신체검사를 하나요? 34

Q.12 양성교육 과정에서 퇴교 후 다시 지원이 가능한가요? 35

Q.13 필기평가 시 낙서를 하거나 틀리면 감점이 되나요? 35

Q.14 국가유공자는 가산점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35
Q.15 1차 필기평가 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 36
Q.16 모집인원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 37
Q.17 문신이 있는 인원도 지원 가능한가요? ····· 37
Q.18 인성검사는 무엇인가요? ····· 37
Q.19 전역 후 재입대가 가능한가요? ····· 38
Q.20 부사관학교 입교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 38

Q&A 2. 복지 분야 ····· **39**

Q.01 간부가 되면 좋은 점이 있나요? ····· 40
Q.02 임관 후 휴가를 갈 수 있나요? ····· 40
Q.03 일과 이후 자유시간이 보장되나요? ····· 41
Q.04 임관 후 대학(원)에 진학이 가능한가요? ····· 41
Q.05 부부군인일 경우 함께 근무 가능한가요? ····· 41
Q.06 군 복무 시 이사를 자주하는데 이사비는 지원이 되나요? ····· 41
Q.07 전역 후 직업보장 제도가 있나요? ····· 42
Q.08 계급별 정년은 어떻게 되나요? ····· 42
Q.09 연금 혜택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42
Q.10 군 호텔 및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나요? ····· 43

Contents

제 2 장. 장교 모집 ····· 45

Q & A 1. 간부사관 ····· 47

Q.01 간부사관 모집선발 일정 및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48

Q.02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가 간부사관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 49

Q.03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여성도 지원이 가능하나요 ? ····· 49

Q.04 예비역은 지원서 및 근무평가서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 49

Q.05 지원을 위한 학위취득 및 계급 기준시기는 언제인가요? ····· 50

Q.06 학점은행제로 4년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로 80학점 이상 취득시 간부사관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 50

Q.07 대학 학력기준과 성적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51

Q.08 지원서 작성시 확인관 및 승인관은 누가 되나요? ····· 51

Q.09 근무평가서 작성은 누가 하나요? ····· 52

Q.10 해외 대학교 출신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나요? ····· 52

Q.11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52

Q.12 현역은 임관 후 자대로 원복 되나요? ····· 53

Q.13 한국사시험 등 필기평가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 53

Q.14 병과분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53

Q&A 2. 전문사관 ····· 55

Q.01 전문사관 모집선발 일정 및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56

Q.02 예비역, 여군도 지원 가능한가요? ····· 57

Q.03 3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지원 가능한가요? ····· 57

Q.04 통역사관은 영어 이외 다른 외국어도 선발하나요? ····· 57

Q.05 학위 및 각종 자격증 취득 기준시기는 언제인가요? ····· 58

Q.06 양성교육 기간과 임관 후 교육은 어떻게 되나요? ····· 58

Q.07 예비합격자는 언제 합격자로 결정되나요? ····· 58

Q.08 외국대학에 다니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서류를 내야 하나요? ····· 59

Q.09 장기복무도 가능한가요? ····· 59

Q.10 4년제 2년제 대학 간호학과 졸업한 사람도 지원 가능한가요? ····· 59

Q&A 3. 학사사관 ····· 61

Q.01 학사장교 모집선발 일정 및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62

Q.02 대학성적이 70% 미만이면 지원할 수 없나요? ····· 63

Q.03 대학 졸업예정자이며 성적 미충족 시 재수강으로 충족되면 지원 가능한가요? ····· 63

Q.04 잠재역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63

Q.05 신체검사 및 등위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 64

Q.06 체력측정이 합격에 영향을 주나요? ····· 64

Q.07 간호학과 졸업 후 학사장교로 임관하면 간호장교가 될 수 있나요? ····· 64

Q.08 학사장교 합격 후 임관 전 단기복무장려금 지급은 언제 되나요? ····· 65

Contents

Q.09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학사사관으로 지원 가능한가요? ··· 65
Q.10 학점은행제로 전문학사 취득 후 4년제 대학 편입 시 학사사관 지원이 가능한가요? ··· 65
Q.11 타군부사관으로 의무복무 기간이 남았을 경우 학사사관 지원이 가능한가요? ··· 65
Q.12 단기복무장려금 지급기준은 무엇인가요? ··· 65

Q&A 4. 학사예비장교 후보생 ··· 67

Q.01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68
Q.02 학사사관과 학사예비장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69
Q.03 학사예비장교가 휴학을 할 때 조치할 내용이 있나요? ··· 69
Q.04 학사예비장교를 포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69
Q.05 학사예비장교는 재학 중 무엇을 하면 되나요? ··· 70
Q.06 단기복무 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 70
Q.07 4학년을 조기 졸업할 경우 임관은 언제 하나요? ··· 70

Q&A 5.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장교) ··· 71

Q.01 모집선발 일정 및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72
Q.02 방송통신대, 사이버 대학교 재학 중에도 지원 가능한가요? ··· 72
Q.03 학년별로 선발하는 인원은 동일한가요? ··· 72
Q.04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에 선발이 되면 모두 장기복무선발이 되나요? ··· 72
Q.05 임관 후에 가산복무 지원금을 반납시 단축 복무 가능한가요? ··· 73
Q.06 가산복무 지원금은 얼마나 지급되나요? ··· 73

Q.07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기 위해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 ····· 73
Q.08 졸업 전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반납하면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나요? ····· 73
Q.09 휴학 중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 신청할 수 있나요? ····· 74
Q.10 학사예비장교 후보생 합격 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 74
Q.11 학교에서 별도 장학금을 받아도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74
Q.12 학비 면제 대상자(교직원, 유공자 자녀, 장학금 수혜 등)는 가산복무 지원금을 얼마나 받나요? ····· 74
Q.13 최종 합격 후 다른 과로 변경 또는 다른 대학으로 편입이 가능한가요? ····· 75
Q.14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에 선발되면 임관까지 어떤 훈련을 받나요? ····· 75

Q&A 6. 예비역의 현역재임용(장교) ····· 77

Q.01 모집선발 일정 및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78
Q.02 현역 재임용자의 최초 부대배치는 어떻게 되나요? ····· 79
Q.03 특전사 출신 예비역도 지원이 가능하나요? ····· 79
Q.04 현역 재임용자도 복무연장·장기복무 지원 가능한가요? ····· 79
Q.05 선발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 80
Q.06 선발평가간 별도의 가산점은 있나요? ····· 80
Q.07 선발 후 인사관리(보직, 경력, 평정 및 지휘추천)는 어떻게 하나요? ····· 81
Q.08 선발 후 인사관리(진급선발)는 어떻게 하나요? ····· 81

Contents

Q&A 7. 준사관 ····· 83

Q.01 선발 일정, 선발 평가요소는 어떻게 되나요? ····· 84
Q.02 선발인원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 85
Q.03 기술행정 준사관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85
Q.04 기술행정 준사관 근무경력 인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85
Q.05 회전익 항공기 조종 준사관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86
Q.06 회전익 항공기 조종 준사관은 라식(LASIK) 등 각막 시술자도 지원이 되나요? ····· 86
Q.07 회전익 항공기 조종 준사관의 한국사·영어 성적 배점은 어떻게 되나요? ····· 87
Q.08 회전익 항공기 조종 준사관 선발 후 교육은 어떻게 받나요? ····· 87
Q.09 경력직 항공운항 준사관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88
Q.10 경력직 항공운항 준사관 선발 후 교육 및 처우는 어떻게 되나요? ····· 88

제 3 장. 부사관 모집 ····· 89

Q&A 1. 민간부사관(남·여) ····· 91

Q.01 부사관 지원 가능한 시기 및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92
Q.02 부사관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93
Q.03 고졸 예정자(3학년)도 부사관 지원이 가능한가요? ····· 94
Q.04 양성기관에서 신체질환으로 퇴교자는 재입영이 가능한가요? ····· 95

Q.05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 지급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96
Q.06 신체검사 유효화제도란 무엇인가요? ····· 97

Q&A 2. 학군부사관후보생(RNTC) ····· **99**

Q.01 RNTC 지원 가능시기 및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100
Q.02 RNTC 선발 후 전문대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100
Q.03 2년제 대학 재학 중 RNTC 지원 가능한가요? ····· 100
Q.04 RNTC 선발 절차 및 선발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 100
Q.05 RNTC 임관 및 입영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101
Q.06 선발평가 간 별도의 가산점은 있나요? ····· 101
Q.07 학군부사관후보생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101

Q&A 3.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1년 가산) ····· **103**

Q.01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104
Q.02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불합격시 민간부사관 지원은 어떻게 하나요? ····· 104
Q.03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 105
Q.04 대학 성적은 어느 정도 되어야 지원 / 임관이 가능한가요? ····· 106
Q.05 양성교육 중 퇴교시 가산복무 지원금은 반납해야 하나요? ····· 107
Q.06 불합격자는 별도 선발평가 없이 민간부사관으로 임관할 수 있나요? ····· 108
Q.07 가산복무 지원금은 얼마나 지급되나요? ····· 108
Q.08 체력검정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 108
Q.09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합격 시 입대는 언제 하나요? ····· 108

Contents

Q.10 양성교육 중 신체질환으로 퇴교시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 자격이 취소되는지, 이때 가산복무 지원금은 반납해야 하나요? ····· 109
Q.11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시 4년만 복무 가능한가요? ····· 109

Q&A 4.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2년 가산) ····· 111

Q.01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112
Q.02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불합격 시 민간부사관 지원은 어떻게 하나요? ··· 112
Q.03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 113
Q.04 대학 성적은 어느 정도 되어야 지원 / 임관이 가능한가요? ····· 114
Q.05 양성교육 중 퇴교시 가산복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나요? ····· 115
Q.06 양성교육 중 신체질환으로 퇴교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 자격이 취소되는지, 이때 가산복무 지원금은 반납해야 하나요? ····· 116
Q.07 체력검정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 116
Q.08 가산복무 지원금은 얼마나 지급되나요? ····· 116
Q.09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시 4년만 복무 가능한가요? ····· 117
Q.10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 부사관(2년가산)으로 합격시 입대는 언제 하나요? 117

Q&A 5. 임관시 장기복무 부사관 ····· 119

Q.01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120
Q.02 지원 특기에 대한 관련 학과와 자격증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120
Q.03 현역에 복무 중인 간부들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121
Q.04 현역으로 복무 중에 있는 병사들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121
Q.05 선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121
Q.06 예비역에서 선발이 되면 양성교육은 어떻게 되나요? ····· 122
Q.07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여성도 지원특기에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 122
Q.08 선발이 되면 의무복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22
Q.09 선발이 되면 무조건 장기복무자로 복무 가능한가요? ····· 122
Q.10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 지급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123

Q&A 6. 현역부사관 ····· 125

Q.01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126
Q.02 연고지 복무 신청 가능 여부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127
Q.03 유급지원병(전문병) 복무 중 지원이 가능한가요? ····· 127
Q.04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금 지급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128
Q.05 임기제부사관에서 단기복무 전환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128
Q.06 임기제부사관에서 단기복무 전환 지원 시 특기변경이 가능한가요? ····· 129
Q.07 임기제부사관에서 단기복무 전환 평가요소는 어떻게 되나요? ····· 130

Contents

Q&A 7. 예비역의 현역재임용(부사관) ····· 131

Q.01 선발일정 및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132
Q.02 현역재임용의 선발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 133
Q.03 특전사 출신 예비역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133
Q.04 재임용 지원간 병과(특기) 변경이 가능한가요? ····· 133
Q.05 재임용 후 교육이 있나요? ····· 133
Q.06 현역재임용자도 복무연장, 장기복무 지원이 가능한가요? ····· 134
Q.07 선발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 134
Q.08 선발평가간 별도의 가산점이 있나요? ····· 135
Q.09 선발 후 인사관리(보직, 경력, 평정)는 어떻게 하나요? ····· 135
Q.10 선발 후 인사관리(진급선발)는 어떻게 하나요? ····· 136
Q.11 부대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 136
Q.12 군번은 어떻게 부여되나요? ····· 136

Q&A 8. 임기제부사관 ····· 137

Q.01 임기제부사관 임관시 급여 세부 지급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 138
Q.02 임기제부사관 임관시 연장복무 개월수별 휴가(연가)는 며칠이 부여되나요? ····· 139
Q.03 임기제부사관도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 139
Q.04 임기제부사관 복무 후 전역을 하게 되면 동원훈련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 140
Q.05 임기제부사관도 영외거주가 가능한가요? ····· 140
Q.06 출근 및 퇴근은 몇시에 해야 되나요? ····· 140

Q.07 임기제부사관도 임관시 장려수당이 있나요? ····· 140
Q.08 임기제부사관 지원 가능한 시기 및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141
Q.09 임기제부사관 선발 평가시 평가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 141
Q.10 임기제부사관 선발 평가시 개인사정으로 체력측정이 제한될 경우 군의관 소견서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 141
Q.11 임기제부사관 지원시 임관하고자 하는 병과(특기)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 142
Q.12 문신이 있는데 임기제부사관 선발이 가능한가요? ····· 142
Q.13 임기제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42
Q.14 임기제부사관 임관 후 현 부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나요? ····· 143
Q.15 임기제부사관도 당직근무를 서야 되나요? ····· 143
Q.16 임기제부사관 신분화 교육 시기와 내용은 무엇인가요? ····· 143
Q.17 임기제부사관도 장기복무 신청이 가능한지와 언제 신청 가능한지요? ····· 143
Q.18 임기제부사관 임관시 지급받는 피복과 지급절차는 무엇인가요? ····· 144
Q.19 단기복무부사관과 임기제부사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144
Q.20 임기제부사관 추가 연장복무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45
Q.21 임기제부사관은 전 병과(특기)를 대상으로 선발하나요? ····· 145

제 4 장. 군무원 모집 ····· **147**

Q & A 1. 군무원 ····· **149**

Q.01 군무원 모집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150
Q.02 군무원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151

Contents

Q.03 저의 근무경력이 지원하려는 직위의 자격요건에 해당될까요? ····· 152
Q.04 희망하는 근무지역을 선택할 수 있나요? ····· 152
Q.05 영어·국사 공인성적이 없어도 응시 가능한가요? ····· 153
Q.06 필기시험 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 154

제 5 장. 전문특기병 모집 ····· 163

Q&A 1. 전문특기병 ····· 165

Q.01 전문특기병이란 무엇인가요? ····· 166
Q.02 카투사 지원자격 및 선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167
Q.03 어학병 지원자격 및 선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168
Q.04 군사과학기술병은 무엇이며, 지원자격 및 선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169

제 6 장. 병과/특기 분류 ····· 171

Q&A 1. 병과/특기 분류 ····· 173

Q.01 장교는 어떤 병과가 있나요 ····· 174
Q.02 초임장교 양성과정별 분류대상 병과는 어떤 것이 있나요? ····· 174
Q.03 초임장교 병과분류는 어떻게 하나요? ····· 175
Q.04 장교 병과분류는 언제·어디서 하나요? ····· 175
Q.05 부사관은 어떤 병과 세부 특기가 있나요? ····· 176
Q.06 초임 민간부사관 특기분류 대상 특기는 어떤 것이 있나요? ····· 176
Q.07 초임부사관 특기분류는 어떻게 하나요? ····· 177

Q.08 병과(세부특기) 분류인원(공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178
Q.09 병과(특기) 분류시 자격이나 전공이 필요한가요? ····· 178
Q.10 병과(특기)별 관련 전공(계열)학과 및 자격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추가도 가능한가요? ····· 179
Q.11 전문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 병과(특기)분류 시 혜택이 있나요? ····· 180
Q.12 전공과 관련없는 병과(특기)에 지원해도 분류가 가능한가요? ····· 180
Q.13 임관 후에 병과를 변경할 수 있나요? ····· 180
Q.14 학군·학사 초임장교의 '항공' 병과 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 181

제 7 장.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 ····· 183

Q&A 1.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공통) ····· 185

Q.01 장기복무/ 복무연장 공석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 186
Q.02 근무평정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 186
Q.03 체력검정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 187
Q.04 감점되는 요소와 선발 불가 사유가 정해져 있나요? ····· 188
Q.05 선발 간 별도의 가산점이 있나요? ····· 189
Q.06 심사위원 질적평가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 189
Q.07 휴직·후송·파견인원은 어디로 지원하나요? ····· 189
Q.08 장기복무 / 복무연장 선발되면 언제까지 근무할 수 있나요? ····· 190

Contents

Q.09 당해연도 전역예정자도 선발하나요? ····· 190
Q.10 장기복무 / 복무연장 선발 후 취하(취소)할 수 있나요? ····· 190

Q&A 2.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장교) ····· 191

Q.01 장교 장기복무는 언제 선발하나요? ····· 192
Q.02 장교 복무연장은 어떻게 선발하나요? ····· 193
Q.03 교육성적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 194
Q.04 상훈점수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 195
Q.05 잠재역량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 196
Q.06 부대평가서는 반영하나요? ····· 197
Q.07 부대추천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 197
Q.08 면접평가 대상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198

Q&A 3.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부사관) ····· 199

Q.01 부사관 장기복무는 언제 선발하나요? ····· 200
Q.02 부사관 복무연장은 어떻게 선발하나요? ····· 201
Q.03 교육성적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 202
Q.04 상훈점수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 203
Q.05 잠재역량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 204
Q.06 부대평가서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 205
Q.07 부대 추천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 206

제 1 장

간부모집 공통 분야

꿈과 미래를 향한 최고의 선택! 육군간부의 길을 알려드립니다.

Q&A 1

모집 분야

01 장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나요?

육군 장교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가 있어야 임관을 할 수 있으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모집과정

구 분	육사 생도	3사 생도	간부 사관	학군 사관 (ROTC)	학사 사관	전문 사관	軍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장교)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장교)	준사관
자 격	고 졸	• 4년제대학 2년 수료 이상 • 2년제 대학졸업		대학 2년 수료	• 4년제대학 졸업(학사) 이상 • 전문분야 : 대학원,특수자격		수업연한 4년 이상 1~4학년	예비역 중·대위 또는 전역예정자	고 졸
의무 복무	10년	6년	3년	2년 4개월	3년	3년	- 학군 : 6년4개월 - 학사 : 7년	2년 또는 3년	5년

* 회전익 항공기 조종 및 통·번역 준사관 임관(10년)

▶ 모집과정별 소개 (지원자격, 모집시기, 지원서 접수 등)

● 육사생도

* **지원연령 :** 만 17~21세 미만의 미혼 남·여
* **지원학력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동등한 학력 인정자
* **모집시기 :** 연 1회 (6월)
* **인터넷 지원서 접수 :** www.kma.ac.kr 원서접수 배너 클릭
* **문의처 및 모집안내(육군사관학교)**

  주소 : 서울시 노원구 사서함77-1호 육군사관학교 입학관리실(우: 01805)

☎ 02)972-7264

• 3사생도

* **지원연령**
  정시생도 : 입교일 기준 만 19~25세 미혼 남·여
  (예비역은 복무기간에 따라 1~3세 지원연령 연장)
  예비생도 : 입교일 기준 만 18 ~24세 미혼 남·여
* **지원학력**
  정시생도 : 4년제 대학교 2년 이상 수료(예정)자 및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예비생도 : 2·4년제 대학 1학년 또는 3년제 대학 2학년 재학중인 자
* **모집시기** : 연 1회 (4~5월)
* **인터넷 지원서 접수** : www.kaay.mil.kr
* **문의처 및 모집안내(육군3사관학교)**
  주소 : 경북 영천시 호국로 사서함135호 입학관리실(우: 38900)

☎ 054)330-3434(대표),3701~2, 3710~11, 3720~22

• 학군사관(ROTC)

* **지원연령** : 임관일 기준 만 20~29세 남·여
  (예비역은 복무기간에 따라 1~3세 지원연령 연장)
* **지원학력** : 학군단이 설치된 4년제 대학 1·2학년 남·여 재학생
  - 5년제 학과 2, 3학년 재학생
  - 학군단 설치 여대 (이화, 숙명, 성신), 기타 여학생은 10개 권역별 선발
* **모집시기** : 연 2회 (3~4월, 9~10월)
* **인터넷 지원서 접수** : www.armyofficer.mil.kr
* **문의처 및 모집안내(학군단, 학생군사학교)**

☎ 각 대학 학군단 / 학생군사학교 (043)830-6030

• 학사사관

* **지원연령** : 임관일 기준 만 20~29세 남·여
  (예비역은 복무기간에 따라 1~3세 지원연령 연장)
* **지원학력** : 4년제 이상 대학 졸업(예정)자로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및 법령에 의거 동일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모집시기** : 연 2회(2~3월, 8~9월)
* **인터넷 지원서 접수** : 국방통합모집 포털(m-recruit.mnd.go.kr)
* **문의처 및 모집안내(ARS : 1588-6953)**

☎ 선발담당관 : 군) 960-7144, 042)550-7144

• 학사 예비장교 후보생

* **지원연령 :** 임관일 기준 만 20~29세 남·여
  (예비역은 복무기간에 따라 1~3세 지원연령 연장)
* **지원학력 :** 수업연한 4년 이상인 국내대학교 1~3학년에 재학중인 자
* **모집시기 :** 연 2회 (2~3월, 8~9월)
* **인터넷 지원서 접수 :** 국방통합모집 포털(m-recruit.mnd.go.kr)
* **문의처 및 모집안내 (ARS : 1588-6953)**

☎ **선발담당관 : 군)960-7144 042)550-7144**

• 軍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장교)

* **지원연령 :** 임관일 기준 만 20~29세 남·여
  (예비역은 복무기간에 따라 1~3세 지원연령 연장)
* **지원학력 :**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국내대학교 1~4학년 재학중인 자
* **모집시기 :** 연 2회 (2~3월, 8~9월)
* **인터넷 지원서 접수 :** 국방통합모집 포털(m-recruit.mnd.go.kr)
* **문의처 및 모집안내 (ARS : 1588-6953)**

☎ **선발담당관 : 군)960-7143 042)550-7143**

• 전문사관

* **지원연령 :** 임관일 기준 만 20~29세 남·여
  (예비역은 복무기간에 따라 1~3세 지원연령 연장)
* **지원학력 :**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로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모집시기 :** 연 2회 (2~3월, 8~10월)
* **인터넷 지원서 접수 :** 국방통합모집 포털(m-recruit.mnd.go.kr)
* **문의처 및 모집안내(ARS : 1588-6953)**

☎ **선발담당관 : 군)960-7142, 042)550-7142**

• 간부사관

*** 지원자격**
- 육군에서 현역으로 복무한 상병 이상
- 현역/임기제부사관(자대근무 3개월 이상) / 민간부사관(자대근무 6개월 이상)
- 육군에서 전역한 예비역(현역 전역 후 3년 이내인 자)

*** 지원연령 :** 임관일 기준 만 20~29세 남·여
(예비역 : 만 20~32세 이하)

*** 지원학력 :**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 또는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

*** 지원서 접수**
- 현역 : 해부대 인사과(지휘계통)
- 예비역 : 지역별 모집부대 인사과
- 인터넷 : 국방통합모집 포털(m-recruit.mnd.go.kr)

*** 모집시기 :** 연 1회 (8~10월)

*** 문의처 및 모집안내(ARS : 1588-6953)**
- 각 부대 인사과

☎ 선발담당관 : 군)960-7142, 042)550-7142

• 예비역의 현역재임용(장교)

*** 지원자격 :** 임관일 기준 전역한 예비역 중·대위 또는 전역예정자, 전역 후 6년 이내인 자로 재임용 후 2년 또는 3년 이상 복무 가능한 자
현역복무 시 계급·병과와 임용 계급·병과가 일치하는 자, 임관 결격 사유(군인사법 제10조 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전역구분(예비역, 퇴역) 중 퇴역자 지원 불가
- 재임용 후 2년 이내 연령정년(장교 43세) 미도달자
- 임관일~전역일까지 복무기간 12년 이내인 장교(근속정년)
- 타군 지원불가

*** 인터넷 지원서 접수 :** 국방통합모집 포털(m-recruit.mnd.go.kr)

*** 모집시기 :** 연 4회 (1, 4, 7, 10월)

*** 문의처 및 모집안내 (ARS : 1588-6953)**

☎ 선발담당관 : 군)960-7141, 042)550-7141

• 준사관

*** 기술행정 준사관**

- 원사 또는 상사로 2년 이상 복무중인 자,
  임관일 기준 만 50세 이하인 자

*** 통·번역 준사관**

- 현역 : 부사관 임관 후 2년 이상 복무중인 자
- 민간 :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
- 연령 : 만 20~45세 이하인 자
  (현역 만 50세까지 지원 가능)

*** 회전익항공기 조종**(헬기조종) **준사관**

- 만 20~50세 이하인 자
- 고교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로 현역/군필자/미필자에 상관없이 지원

*** 경력직 항공운항 준사관**

- 부조종사 이상 조종 경력자(회전익 항공기)
- 현역 장교 : 항공 대위 이상으로 임관일 이전 전역자
- 예비역 장교 : 항공병과 장교로 전역 후 3년 이내인 자

*** 인터넷 지원서 접수 :** 국방통합모집 포털(m-recruit.mnd.go.kr)

*** 모집시기 :** 연 1회 (단, 기술행정준사관은 연 2회 선발)

*** 문의처 및 모집안내(ARS : 1588-6953)**

☎ 선발담당관 : 군)960-7147, 042)550-7147

02 부사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나요?

육군의 부사관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소지자가 임관할 수 있으며, 지원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모집과정

구분	민간부사관		임관시 장기복무 부사관	특전 부사관	현역 부사관	임기제 부사관 (전문하사)	軍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부사관)	예비역의 현역재임용 (부사관)	학군 부사관 (RNTC)
	남군	여군							
자격	고등학교 졸업 이상, 동등한 학력 인정자						전문대 이상 대학 재학생	중사 이상의 예비역 부사관	학군단 설치대학 대학 1~3학년
의무복무	4년	4년	7년	4년	4년	6개월 ~ 48개월	5~6년 (장학수혜 기간 1~2년 포함)	2년 또는 3년	4년

▶ 모집과정별 소개(지원자격, 모집시기, 지원서 접수 등)

● 민간부사관(남군)

* **지원연령 :** 임관일 기준 만 18~29세 남성
  (예비역은 복무기간에 따라 1~3세 지원연령 연장)
* **지원학력 :** 고졸이상자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 중학교 졸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고교 3학년 재학생은 임관일 이전 졸업시 지원 가능
* **인터넷 지원서 접수 :** 국방통합모집 포털 (m-recruit.mnd.go.kr)
* **모집시기 :** 연 4회
* **문의처 및 모집안내(ARS : 1588-6953)**

☎ 선발담당관 : 군)960-7155~7156, 042)550-7155~7156

• 민간부사관(여군)

* **지원연령 :** 임관일 기준 만 18~29세 여성
  (예비역은 복무기간에 따라 1~3세 지원연령 연장)
* **지원학력 :** 고졸이상자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 중학교 졸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고교 3학년 재학생은 임관일 이전 졸업시 지원 가능
* **인터넷 지원서 접수 :** 국방통합모집 포털 (m-recruit.mnd.go.kr)
* **모집시기 :** 연 4회
* **문의처 및 모집안내(ARS : 1588-6953)**

☎ **선발담당관 : 군)960-7155~7156, 042) 550-7155~7156**

• 임관시 장기복무 부사관

* **지원연령 :** 임관일 기준 만 18~29세 남·여
  (예비역은 복무기간에 따라 1~3세 지원연령 연장)
* **지원학력 :** 고졸이상자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 중학교 졸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고교 3학년 재학생은 임관일 이전 졸업시 지원 가능
* **인터넷 지원서 접수 :** 국방통합모집 포털 (m-recruit.mnd.go.kr)
* **모집시기 :** 연 3회

☎ **선발담당관 : 군)960-7171, 042)550-7171**

• 특전부사관

* **지원연령 :** 임관일 기준 만 18~29세 남·여
* **지원학력 :** 고졸이상자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 중학교 졸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인터넷 지원서 접수 :** www.swc.mil.kr
* **모집시기 :** 연 4회
* **문의처 및 모집안내(특수전사령부) : 02-3403-1163, 1668-5841(대표번호)**

• 예비역의 현역재임용(부사관)

* **지원자격 : 전역 후 6년 이내인** 중사 이상의 예비역 부사관, 재임용 후 2년 또는 3년 이상 복무 가능한 자,
  - 전역구분(예비역,퇴역) 중 퇴역자 지원 불가
  - 임관 후 2년 이내 연령정년 미도달자(중사45세,상사53세)
  - 타군지원 불가
  - 임관 결격 사유(군인사법 제10조 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인터넷 지원서 접수 :** 국방통합모집 포털 (m-recruit.mnd.go.kr)
* **모집시기 :** 연 4회 (1, 4, 7, 10월)
* **문의처 및 모집안내(ARS : 1588-6953)**

☎ **선발담당관 : 군)960-7172, 042)550-7172**

• 현역부사관

* **지원자격**
  - 임관일 기준 18~29세
  - 고졸이상자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 중학교 졸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부사관학교 입교일 기준 일병~병장. 단, 병장인 경우 전역일자가 육군 부사관학교 입교일 이후인 자
* **지원서 접수 :** 국방인사정보체계 개인신청, 서류제출(소속부대)
* **모집시기 :** 연 4회 (1, 3, 6, 10월)
* ☎ **선발담당관 : 군)960-7152, 042)550-7152**
  근무부대 사·여단 인사처 (지휘계통)

• 임기제부사관

* **지원자격** : 육군에서 근무 중인 현역병 (전역 6~1개월 전 신청)
* **지원서 접수 :** 소속부대 행정반, 인사과, 주임원사실
* **모집시기 :** 연중 지속 (사·여단급 이상 선발권 부대에서 수시 선발)
* **문의처 및 모집안내 (ARS : 1588-6953)**

☎ **선발담당관 : 군)960-7157, 042)550-7157**

● 軍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1년 가산/2년 가산)

*** 지원자격**

– 전문대 이상 대학(원) 재학생으로

・1년 가산 : 2년제 기준 2학년 재학생
(3년제는 3학년, 4년제는 4학년, 2년제 대학원은 2학년)

・2년 가산 : 2년제 기준 1학년 재학생
(3년제는 2학년, 4년제는 3학년, 2년제 대학원은 1학년)

*** 인터넷 지원서 접수 :** 국방통합모집 포털 (m-recruit.mnd.go.kr)

*** 모집시기 :** 연 1회

*** 문의처 및 모집안내 (ARS : 1588-6953)**

☎ 선발담당관 : 군)960-7153, 042)550-7153

● 학군부사관후보생(RNTC)

*** 지원자격**

– 학군단 설치 대학의 1·2·3학년 재학생
(경북전문대, 전남과학대, 전주기전대, 대경대, 동강대)

・2년제 학과 1학년, 3년제 학과 2학년, 4년제 학과 3학년

*** 지원서 접수 :** 각 대학 학군단

*** 모집시기 :** 연 1회(당해 연도 계획에 의거)

*** 문의처 및 모집안내**

☎ 육군부사관학교 : 063) 859-6313, 6318
경북전문대 학군단 : 054) 630-5226, 5229~5231
전남과학대 학군단 : 061) 360-5140
전주기전대 학군단 : 063) 232-2360
대 경 대 학군단 : 053) 850-1091~1093
동 강 대 학군단 : 062) 260-6973

Q03 타군(공군·해군) 사관학교 퇴교자가 육군 장교 지원이 가능한가요?

A 각 군 사관학교에서 퇴교 된 경우에도 간부선발 과정에 재응시 가능합니다.

Q04 부대 및 지역을 선택하여 근무가 가능한가요?

A 본인 희망에 의해 부대 및 지역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분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산으로 분류되므로 본인이 원하는 부대 및 지역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Q05 임관 후 자기개발 여건이 보장되나요?

A 네, 보장됩니다.

☞ **기능사 및 산업기사 등 응시가 가능하며, 어학 및 자격증 공부도 가능합니다. 또한 부대별 여건에 따라 야간대학 및 사이버 대학, 대학원 진학, 부대 인근의 학원수강 등이 가능합니다.**

06 이중국적자는 장교·부사관 지원자격이 되나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임관 결격사유)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원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지원이 제한됨**

Tip

- **임관 결격사유**(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또는 같은법 제5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07 의무복무 만료 전 전역이 가능한가요?

>>> 의무복무 만료 전 전역을 할 수 없습니다.

☞ **군인사법 7조에 의거, 의무복무 만료 전 전역은 불가합니다.**

08 장교 · 준사관 ·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장교 · 준사관 ·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 정	육 사	3사관 · 간호사관	준사관	민간 부사관 (남·여)	임관시 장기복무 부사관	학사사관, 전문사관, 간부사관	학군 사관	軍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장교)	軍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부사관)
복무 기간	10년	6년	- 기술행정 : 5년 - 통번역, 항공 : 10년	4년	7년	3년	2년 4개월	- 학군 : 6년 4개월 - 학사 : 7년	- 1년 가산 : 5년 - 2년 가산 : 6년

※ 軍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장교)
- '학군장교'로 임관 : 2년 4개월 + 가산복무 수혜기간 4년
- '학사장교'로 임관 : 3년 + 가산복무 수혜기간 4년

※ 軍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부사관)
- 1년 가산 : 4년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수혜기간 1년
- 2년 가산 : 4년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수혜기간 2년

Q09 학군사관(ROTC)과 학사사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학군사관은 대학생활을 하면서 군사교육을 받고 졸업과 동시에 임관하는 제도이며, 학사사관은 대학 졸업 후 군사교육을 받고 임관하는 제도입니다.

☞ **의무복무기간 : 학군사관**(2년 4개월), **학사사관**(3년)

Q10 타군(해군·공군) 과정에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선발일정이 다를 경우 중복지원이 가능하나, 최종 선발시 다른 지원자 1명이 합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므로 신중히 판단하여 1개 과정 및 해당 군에 지원하기를 권장합니다.

Q11 징병검사를 받았는데 장교 및 부사관 지원시 또 신체검사를 하나요?

장교 및 부사관 지원시 별도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병무청에서 징병검사(일반병 대상)를 하였더라도 장교 및 부사관 과정에 지원시 1차 합격자에 한해 별도 신체검사 실시**

☞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징병검사와 간부 신체검사 기준 상이**

Q12 양성교육 과정에서 퇴교 후 다시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양성교육 과정에서의 퇴교자도 간부 선발과정에 재응시 가능합니다.

Q13 필기평가 시 낙서를 하거나 틀리면 감점되나요?

A 필기평가 평가지에 문제에 체크, 낙서, 풀이 과정 기재 등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지각속도 검사 평가시에 문제를 틀렸을 경우 감점 처리됩니다. 답안지는 낙서를 할 경우 리딩이 되지 않을 수 있어 감점될 수 있으니 낙서를 하면 안됩니다.

☞ **평가 중 다른 영역 문제 풀이시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Q14 국가유공자는 가산점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국가유공자 중 취업보호 대상자는 가산점을 인정합니다.

☞ **해당 지방 보훈청에 문의하여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가산점**(5% / 10%)**을 인정합니다.**

15 1차 필기평가 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1차 필기평가는 간부선발도구, 인성검사입니다.
필기평가는 장교(간부사관), 준사관(회전익항공조종준사관) 과정에만 실시 됩니다.

☞ **간부선발도구 : 지적능력평가, 직무성격검사, 상황판단검사**

Tip

● **간부선발도구 평가 세부내용**

구 분		평 가 내 용
지적능력평가	언어능력	· 언어로 제시된 자료를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로 어휘력 검사, 언어추리 및 독해 검사로 구성 · 어휘력 검사는 문맥에 가장 적합한 어휘를 찾아내는 문제로 구성, 언어추리 검사와 독해력 검사는 글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논리적 구조를 올바르게 분석한 것을 고르거나 배열하는 문제로 구성
	자료해석	· 주어진 통계표, 도표, 그래프 등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능력
	공간능력	· 주어진 지도를 보고 목표지점의 위치와 방향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측정
	지각속도	· 눈으로 직접 읽고 문제를 해결하는 지각 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
직무성격검사		· 개인의 의견이나 행동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구성
상황판단검사		· 제시된 상황 시나리오에 대해 대처하는 문항으로 구성

* **자세한 내용은 국방통합모집포털(https://m-recruit.mnd.go.kr) 홈페이지 [육군]-[커뮤니티]-[자료실]에 게시**

16 모집인원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군 특수성을 고려 모집인원은 비공개합니다.

☞ **모집인원을 공개할 경우 부대의 규모 및 병과 체계/인원 등 노출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17 문신이 있는 인원도 지원 가능한가요?

문신이 있는 인원이 간부 지원은 가능하나 1차 합격후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선발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 **문신 판정 기준**

- 문신의 면적은 가로 및 세로 최장축의 길이를 곱하여 계산
  - * 제거한 경우 : 1급
  - * 노출되는 부위의 합계 면적이 120㎠ 이하이고, 노출되지 않는 부위의 합계면적도 120㎠ 이하인 경우 : 2급
  - * 노출되는 부위의 합계 면적과 노출되지 않는 부위의 합계면적 중 어느 하나라도 120㎠ 초과하는 경우 : 4급
  - * 면적과 관계 없이 노출부위(두부, 목)에 있거나, 혐오감·위화감을 조성하는 내용(성적표현, 욕설, 테러단체 옹호문구 등)이 포함된 문신인 경우 : 5급

18 인성검사는 무엇인가요?

인성검사(MMPI-2-RF)란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객관적 성격검사로 개인의 심리적 부적응 및 성격적인 문제를 탐지하여 군복무 적합도를 판단하는 검사입니다.

Tip

- **인성검사 실시요령**
  - * 인성검사는 본인의 생각을 그대로를 답하여야 하며,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는 경우 이를 탐지할 수 있는 특수한 척도들이 포함되어 있어 오히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하여야 합니다.

19 전역 후 재입대가 가능한가요?

전역 후 재입대 가능 연령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군 복무한 기간에 따라 임관일 기준 만 30~32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Tip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제19조)**
  :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연장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 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20 부사관학교 입교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입교 준비물은 합격통지서,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최종학력증명서 등이며, 육군부사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입교안내문에 자세히 안내되니 확인 후 입교하면 됩니다.

☞ **부대 지급 품목 :**
사계절/하계 전투복, 방상 내·외피, 베레모, 요대, 동·춘추 내의, 운동복, 속옷, 양말, 러닝, 수건, 전투화, 운동화, 운동모, 슬리퍼, 우의, 장갑, 장갑, 미세먼지 마스크, 동계 작전모, 세면백, 축구화, 목도리, 귀덮개, 손수건

☞ **개인 준비 품목 :**
여분 개인 운동복/운동화(단색계열) 추가 휴대(권장), 개인 화장품, 개인 필요 물품(부대 지급: 칫솔, 휴지, 치약, 샤워타올 등), 개인 컵 또는 텀블러 휴대 가능, 개인 자물쇠, 여분의 안경, 개인용 우산(검정색 계열), 개인 비상약, 스포츠 양말,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개인 핸드폰 사용시), 유선 이어폰(학습용), 일체형 스마트폰 충전기, 추가 속옷류, 여군 속옷 및 개인위생물품

* 여군은 개인 휴대한 속옷류에 대한 금액을 입소 후 개인별 지급
* 교육 2주차 주말 이후 휴대폰 사용 및 흡연 가능(일과 시간 이후)

Tip

- **반입금지 품목 :** 디지털카메라, 노트북, MP3(아이팟), 태블릿PC(아이패드, 갤럭시탭), 스마트워치, 에어팟, 블루투스 이어폰, 게임기, 무선공유기, USB 연결가능 전자장비, 저장장치, 분리형 보조배터리, 장신구, 주류, 환각성 약품, 다용도 툴, 칼, 가위 등
- **입영시 복장 :** 검정색(남색) 계열의 운동복 / 개인 운동화 착용 권장
- **두발 :** 단정한 두발(남자 - 스포츠형, 여자 - 짧은 커트), 염색 금지
- **군사훈련을 대비하여 입대 전에 적절한 운동으로 체력단련 요망**

Q&A 2

복지 분야

01 간부가 되면 좋은점이 있나요?

>>> 간부가 되면 좋은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장 점
자기개발	• 국내 및 국외(미국·독일 등 22개국) 위탁교육 지원 기회 부여 • 영어반, 제2외국어과정(6개 국어) 지원 기회 부여 • 일과 이후 자격증 취득 / 학원 수강 등 자기개발 여건보장
복지혜택	• 독신자 숙소 지원 • 기혼자는 관사 및 APT 무상 지원 / 이사비용 지급 • 자녀 교육비(고등학교) 지원 • 군 골프장, 호텔 / 콘도 저렴하게 이용가능 • 주 5일제 시행 / 군 의료기관 무료이용 / 의료보험 혜택
연금혜택	• 20년 이상 복무 후 연금 수혜 • 군인공제회 회원으로 시중 은행대비 높은 이자로 목돈 마련과 아파트 특별 분양 기회제공 등 주택 마련 여건보장 • 일과 후 및 휴무일 근무시, 휴가 미실시시 수당 지급 등
취업지원	• 10년 이상 복무 후 전역시 취업지원(전역전 사회적응기간 부여)
기 타	• 20년 이상 복무시 국립묘지 안장(본인 희망시, 배우자 포함) • 정년이 보장된 안정된 직장 - 상사(53세), 원사(55세), 소령(50세), 중령(53세), 대령(56세)

02 임관 후 휴가를 갈 수 있나요?

>>> 임관 후 휴가는 1년에 21일을 분산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본인희망에 의해 21일 범위내에서 연중 균등하게 분산실시 가능**

☞ **휴가는 1시간 단위로 1회 또는 수회 단위로 분할 실시 가능**

☞ **휴가 미실시자의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

03 일과 이후 자유시간이 보장되나요?

일과 이후 자유시간이 보장됨은 물론, 주말·휴일·국경일 등 개인 여가 활동과 휴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04 임관 후 대학(원)에 진학이 가능한가요?

해당소속부대 지휘관 승인을 얻어 소속부대 인근의 야간대학(원)에 자비로 취학이 가능하며, 국내·외 위탁생으로 선발 시 학비 지원 등 자기개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05 부부군인일 경우 함께 근무 가능한가요?

부부군인의 경우 계급 / 직책을 고려, 동일권역 내에서 복무가 가능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06 군 복무 시 이사를 자주하는데 이사비는 지원되나요?

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 **이사화물비는 복무기간과 이사 거리,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지급**

☞ **자기부담으로 선(先) 이사 후, 신 근무부대에서 신청하여 지급받게 되며, 군 숙소 부족시 전세자금 또는 주택수당 수혜 가능**

07 전역 후 직업보장 제도가 있나요?

>>> 전역 후 취업보장을 위해 사회적응 및 직업보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5년 이상 군복무 후 전역하는 군인에게는 고용노동부 및 국가보훈부 산하 직업 훈련원에서 사회적응 교육을 시행하고, 10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하는 군인에게는 직업보도 교육을 통하여 각 공기업/사기업에 취업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08 계급별 정년은 어떻게 되나요?

>>> 계급별 정년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 2026년

구 분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준위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정년 (세)	40	45	53	55		43 근속정년 : 임관이후 15년			50	53	56

09 연금 혜택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20년 이상 복무 후 전역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립묘지 안장 및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고, 33년 이상 군복무 후 전역시에는 심의를 통해 보국훈장 수혜로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군 호텔 및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나요?

>>> 군인은 모든 군 호텔·콘도·골프장·복지회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군 호텔 및 콘도, 체력단련장(골프장), 군전용 쇼핑몰 등**

* 홈페이지 : 육군복지포털(https://www.welfare.mil.kr)

☞ **군에서 운영하는 모든 복지시설은 민간시설 대비 40~70%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 가능하며, 상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꿈과 미래를 향한 최고의 선택! 육군간부의 길을 알려드립니다.

제 2 장

장교 모집

꿈과 미래를 향한 최고의 선택! 육군간부의 길을 알려드립니다.

Q&A 1

간부사관

01 간부사관 모집선발 일정 및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간부사관은 8월 중에 공고를 하며, 9월에서 12월까지 1·2차 평가, '27년 1월에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지원자격은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현역 병·부사관, 전역 후 3년 이내인 예비역입니다.

☞ **모집·선발일정**(당해 연도 선발일정 반드시 확인)

공고	접 수	필기평가/ 1차발표	신체검사, 신원조사	면접평가	최종발표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7년 1월

☞ **지원자격**

- 연령 : 임관일 기준 만 20~29세(군필자는 1~3세까지 합산)

군 복무기간	2년 이상	1 ~ 2년	1년 미만
합산 나이	3세	2세	1세

- 학력 : 4년제 대학 2학년 수료이상, 전문대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학점은행제 80학점 이상)
- 신분 : 현역/임기제부사관 3개월 이상, 민간부사관 6개월 이상의 자대 근무경력, 현역병은 상병 이상, 예비역은 전역 후 3년 이내인 자(전군 지원가능)
  ※타군 현역 지원자는 각 군의 참모총장 추천서 첨부

Tip

- **임관 결격사유**(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또는 같은법 제5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Q02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가 간부사관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가 간부사관으로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받은 가산복무 지원금 전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 **대통령령 제28423호**(2017.11.14.)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
☞ **육규 107**(인력획득 및 임관규정) **대학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선발**

Q03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여성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간부사관은 군 복무를 하고 있거나 군 필한 인원에 대한 장교임관 제도입니다. 따라서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은 남·여 구분 없이 지원이 불가합니다.
여성은 현역부사관이거나 군 전역한 후 3년 이내의 예비역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Q04 예비역은 지원서 및 근무평가서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지원서는 인터넷으로 지원 후 1차 합격 시 개인 제출서류와 함께 육군인사사령부로 제출하고, 근무평가서는 해당 부대에서 작성하여 육군인사사령부로 제출하되 예비역인 경우 대대급 이상 제대 주임원사 책임하에 작성해야 합니다.

☞ **예비역 근무평가서 작성 책임 : 전역 전 부대 주임원사**

05 지원을 위한 학위취득 및 계급 기준시기는 언제인가요?

학위취득 및 계급은 공고 연도 다음 해 임관일(잠정 7. 1.부) 전까지 기준으로 합니다. 세부사항은 당해 연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역 후 기간은 해당연도 공고일 기준

☞ 임관 전 학위취득 또는 수료 예정자

- 최초 지원서 제출시 예정증명서 제출
- 임관 전 학위취득 또는 수료 증명서 제출

※ 예정증명서 제출 후 임관 전 학위취득 또는 2학년 수료 증명서 미제출시 불합격 조치

Tip **학위 또는 2학년 수료 예정증명서 제출 후 합격한 인원이 학위 또는 2학년 수료 미취득시 임관이 불가능 함.**

06 학점은행제로 4년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로 80학점 이상 취득시 간부사관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육규 107 근거에 따라 학점은행제 과정인 경우 합산 80학점 이상 취득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07 대학 학력기준과 성적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학력은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 수료자. 다만 학점은행제 과정인 경우 합산 80학점 이상 취득자, 2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예정자만 가능합니다. 대학성적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 준비 서류

- 졸업자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 재학중인자 : 2학년 이상 수료 증명서
- 학점은행제 : 평생교육진흥원 발행 2년제 대학졸업 이상자격의 학점인증서 및 성적증명서

☞ 대학성적

- 전 학년 성적증명서 : 성적증명서에 이수학점, 평균평점, 백분율 환산점수 기재
- 편입했을 경우 편입 전(前) 대학 성적도 포함

Tip

- **재학중인 자는 수료증명서 이외 서류는 불가**
  ※ 예 : 휴학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2학년 수료증명서 자격은 대학마다 학점 기준이 다름**

08 지원서 작성시 확인관 및 승인관은 누가 되나요?

확인관은 여단급(대령급) 이상 제대의 인사참모(과장), 승인관은 여단급(대령급) 이상 제대의 지휘관입니다. 지원서 및 관련 서류들은 사·여단급(장성급) 이상 제대에서 종합하여 최종 확인 후 육군인사사령부로 발송해야 합니다.

Tip

☞ 예비역 근무평가서 작성 책임 : 전역 전 부대 주임원사

09 근무평가서 작성은 누가 하나요?

근무평가서는 병은 중대장이, 간부는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작성합니다.

Tip

☞ 예비역 근무평가서 작성 책임 : 전역 전 부대 주임원사
☞ 지휘추천은 22년부터 평가요소에서 제외됨

10 해외 대학교 출신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나요?

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은 기본 제출서류에 추가하여 학위증명서류(학위기) 1부와 대학성적증명서 원본 1부, 학위조회동의서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Tip

- **학위증명서류(학위기), 대학성적증명서 원본은 주재국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APISTILLE) 확인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됨.**
- **차후 인사사령부에서 학위검증을 추가 시행 / 확인**

11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가산점은 표창, 어학, 무도, 자격증, 군사학 등 다양한 내용이 적용되나 반드시 모집·선발 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 및 발급기관만 적용됩니다.

Tip

- **가산점은 반드시 증명서가 있어야 가능함으로 지원서류 제출 시 가산점 증명서류를 포함하여 제출**
- **육군본부로 기변이 되어 있는 현역의 경우는 기변내용을 인쇄하여 제출해도 가능**

12 현역은 임관 후 자대로 원복 되나요?

병과 별 인력운영 수준을 고려하여 전산분류를 실시하여 부대분류를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 복무한 자대로 분류 가능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13 한국사시험 등 필기평가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필기평가는 간부선발도구와 인성검사를 평가합니다.
필기평가는 장교로서의 지적능력, 이해력, 판단력, 적성 등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국방통합모집포털(https://m-recruit.mnd.go.kr) 홈페이지 [육군] - [커뮤니티] - [자료실]에 예문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사시험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공인 인증서로 대체하여 가점 적용합니다.

Tip

- **필기시험의 점수는 준비한 노력에 정비례함을 인지**
- **인성검사는 개인의 인성을 평가하는 도구이므로 별도의 공부가 필요 없음. 평가시 과장 없이 솔직하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14 병과분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병과분류는 양성교육 기간 중 학생군사학교에서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되, 군 경력, 대학 전공, 선발 및 양성교육 성적을 반영하여 전산으로 최종 병과분류를 실시합니다.

Tip

- **병과선택은 병과별 임무, 대학전공, 개인적성 고려 선택**
- **지원서 접수 시 개인 희망병과 작성은 참고용으로만 활용**

꿈과 미래를 향한 최고의 선택! 육군간부의 길을 알려드립니다.

Q&A 2

전문사관

01 전문사관 모집선발 일정 및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전·후반기 구분하여 연 2회 선발하고 있으며 선발과정은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인력계획에 따라 전·후반기 선발과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발 과정에 대한 부분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은 전 과정 공통으로 학사 학위(예정자 포함) 이상의 학력과 연령은 임관일 기준 만 20~29세까지이며, 과정별 세부 지원자격은 모집계획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모집·선발일정**(당해 연도 선발일정 반드시 확인)

구 분	공 고	접 수	전공평가/ 1차발표	신체·면접 (인성)	신원 조사	최종 발표
전반기 (전산, 재정, 통역, 5급공채)	3월	3월	4월	5월	5월	6월
후반기 (전 과정)	8월	9월	10월	11월 ~ 12월	11월 ~ 12월	'26년 1월

☞ **지원연령 : 임관일 기준 만 20~29세**

- 5급공채, 외국변호사 자격 소지자, 공인회계사협회등록증소지자, 박사학위 보유자, 변리사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수습자, 의사면허취득자 : 만 29세
- 군필자는 1~3세까지 군 복무기간에 따라 합산 적용

Tip

- **임관 결격사유**(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또는 같은법 제5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02 예비역, 여군도 지원 가능한가요?

>>> 예비역과 여군도 지원이 가능하며, 예비역 지원시 지원 연령은 군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세까지 합산 적용됩니다. 여군은 당해 연도 인력정책에 따라 선발을 하지 않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집·선발 공고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Tip

- **예비역 나이 합산 기준**

군 복무기간	2년 이상	1 ~ 2년	1년 미만
합산 나이	3세	2세	1세

03 3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지원 가능한가요?

>>> 전문사관은 학사학위 취득(예정)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04 통역사관은 영어 이외 다른 외국어도 선발하나요?

>>> 육군에서 선발하는 통역사관은 영어만 선발합니다.
영어 이외 다른 외국어 통역사관은 선발하지 않습니다.

Tip

- **통역사관 어학능력 기준**

자필 평가			말하기 평가				
TOEIC	TEPS	TOEFL	TEPS-S	TOEIC-S	OPIc	G-TELP	FLEX
950점 이상	903점 이상	CBT 264점 이상 IBT 114점 이상	81점 이상	180점 이상	IH 이상	Level 2, 96이상	227 이상

05 학위 및 각종 자격증 취득 기준시기는 언제인가요?

>>> 전반기는 9월 초, 후반기는 공고 다음해 3월 초 기준입니다.
단, 공고문상 취득(예정)자로 표시된 과정만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과정은 사전에 학위 및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서류 제출일은 공고문을 통해 기한을 명시하고 있으니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6 양성교육 기간과 임관 후 교육은 어떻게 되나요?

>>> 전문사관의 양성교육 기간은 7주이며, 가입교 1주를 고려하면 총 8주가 됩니다.
임관 후에는 과정마다 교육기간이 다르며, 5급공채·교수·법무행정 사관은 임관 후 육군통제의 별도 교육 없이 해당 부대로 보직되어 임무를 수행합니다.

07 예비합격자는 언제 합격자로 결정되나요?

>>> 예비합격자는 합격 인원 중 양성교육 입교 전까지 입교를 포기하겠다는 서약서를 접수했을 때 결정이 되며, 개별 통보합니다.

08 외국대학에 다니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서류를 내야 하나요?

>>> 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은 기본 제출서류에 추가하여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첨부한 학위증명서 원본, 성적증명서 원본(대학 성적 산출기준[평균평점, GPA, 등급 등] 포함), 학위조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번역본 포함)

Tip
- **차후 인사사령부에서 학위검증을 추가 시행 / 확인**
- **합격 후 양성교육에 입소한 인원이라도 학위검증 결과 미취득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이 취소됨**

09 장기복무도 가능한가요?

>>> 전문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은 3년입니다. 만일 장기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과정별 장기복무 계획에 의거 장기복무를 신청하여 선발되면 장기복무가 가능합니다.

Tip
- **장기복무 선발 일정 : 지원서 접수(8월), 발표(10월)**
  ※ 군·치의, 법무행정 사관은 수시 장기지원 가능

10 4년제 2년제 대학 간호학과 졸업한 사람도 지원 가능한가요?

>>> 간호 지원자격은 '학사 학위 취득(예정)자로서 간호사 면허 취득(예정)자' 입니다. 따라서 4년제 2년제 대학 졸업시 학사학위 취득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꿈과 미래를 향한 최고의 선택! 육군간부의 길을 알려드립니다.

Q&A 3

학사사관

01 학사장교 모집선발 일정 및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모집일정은 해당연도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원자격은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이며 임관일 기준 만20세 이상~29세 이하인 자, 군필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응시연령 (1~3세) 합산 적용

Tip

- **군인사법 시행령 제8조**(응시자의 자격)
  ③ 사관후보생 :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고등교육법 제53조**(학위의 수여)
  ① 원격대학의 학사학위과정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6조**(학위 수여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학위를 수여한다.
- **임관 결격사유**(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또는 같은법 제5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Q02 대학성적이 70% 미만이면 지원할 수 없나요?

>>> 대학성적 70% 미만 대상자는 지원하더라도 서류전형 심사에서 불합격됩니다.
장교 임용은 대학교 성적이 100분의 70% 이상 취득자만 장교로 임용하고 있으며, 외국대학 졸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적 기준은 지원 전(前) 모든 학기 백분위 평균입니다.

Q03 대학 졸업예정자이며 성적 미충족 시 재수강으로 충족되면 지원 가능한가요?

>>> 1차 합격자 서류 제출 시 표기된 전 학기 성적 백분율(평균)을 적용하며, 계절학기 및 재수강 등을 신청하여 학기 성적(백분율)에 반영되어 있으면 됩니다.

Q04 잠재역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잠재역량은 영어, 제2외국어, 전산 자격증, 한자, 무도, 표창, 전문 자격증, 안보학 이수 등 다양한 분야의 자격증이 적용되며 매년 모집·선발 공고문에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최소 기준을 명시하여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잠재역량 점수는 자격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높은 수준의 자격증이 낮은 수준의 자격증에 비해 높은 점수를 부여받습니다.
잠재역량 관련 세부 항목 등 자세한 사항은 매년 모집과정별 모집·선발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Tip

- **육규 107 인력획득 및 임관규정**(선발요소 및 배점기준)
  - 군 정보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다양한 분야의 우수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각 모집과정별 가산점제도를 시행한다.
    * 가산점 부여범위는 면접점수의 15% 이내로 한다.

05 신체검사 및 등위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 육군규정 161 건강관리 규정에 따라 국군병원에서 판정하며, 신체등위 BMI (신장/체중) 산출방법은 모집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Tip

- **신체검사**
  - 국방부령 제968호(2024. 2. 1.)「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 질병 ·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적용
  - 국방부령 제948호(2018.1.22.) 「의무 · 법무 · 군종 · 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별표 2] 산부인과 관련 질병 · 심신장애의 정도 및 판정기준 적용
- **체격등위**
  - 국방부령 제948호(2018.1.22.)「의무 · 법무 · 군종 · 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별표 1] 신장 · 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 적용

06 체력측정이 합격에 영향을 주나요?

>>> 체력검정 배점은 당해 연도 모집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합격자는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게 되므로 체력측정 결과가 중요한 평가항목이며 자세한 내용은 매년 모집·선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07 간호학과 졸업 후 학사장교로 임관하면 간호장교가 될 수 있나요?

>>> 간호장교는 전문사관 또는 국간간호사관학교에서 선발하고 있으며, 학사장교는 간호장교로 임관할 수 없습니다.

Q08 학사장교 합격 후 임관 전 단기복무장려금 지급은 언제 되나요?

A >>> 학사장교 합격 후 전 합격자들이 보증보험을 완료한 시점부터 지급이 되며, 통상 입교 1~2주 전에 지급됩니다.
(1~3학년은 4학년 때 지급, 4학년 및 졸업생은 선발된 해 연말에 지급)

Q09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학사사관으로 지원 가능한가요?

A >>> 지원이 가능하며, 합격 후 둘 이상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으며 한가지 신분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Q10 학점은행제로 전문학사 취득 후 4년제 대학 편입 시 학사사관 지원이 가능한가요?

A >>> 학사학위 취득 및 예정자는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1 타군부사관으로 의무복무기간이 남았을 경우 학사사관 지원이 가능한가요?

A >>> 지원이 가능하며, 해당 군 참모총장 지원승인 공문이 필요합니다.

Q12 단기복무장려금 지급기준은 무엇인가요?

A >>> 장려금 지급액은 수업료 및 수학보조금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한도로 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합니다.
지급대상은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 후보생, 예비장교 후보생이 아닌 사람으로서 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한 사람입니다.
지급기준은 4년제 대학 4학년 때, 4학년 및 졸업생의 경우 선발된 해 연말에 지급합니다.

꿈과 미래를 향한 최고의 선택! 육군간부의 길을 알려드립니다.

Q&A 4

학사예비장교 후보생

01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 대상은 국내 4년제 대학 1~3학년이며,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ip

- **임관 결격사유**(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02 학사사관과 학사예비장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학사사관은 대학교 4학년 및 대학교 졸업자(학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며, 학사예비장교는 4년제 대학 1~3학년 때 선발하여 졸업 후 학사장교로 임관합니다.

Tip

- **대통령령 제 33692호(2026. 2. 3.) 군인사법 시행령 제8조의 2항**
- **육군규정 107(인력획득 및 임관규정) 제41조 학사예비장교 후보생관리**

03 학사예비장교가 휴학을 할 때 조치할 내용이 있나요?

>>> 학사예비장교가 휴학을 할 수 있는 사유 및 조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휴학 허용기준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 진료 치료를 위한 휴학
- 가사사정(본인외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 외국 대학에 유학 또는 연수자
- 교환학생

☞ 조치해야 할 사항

- 휴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학군단에 관련 증명서류 제출 → 육군본부 승인 지시에 의거 1년 이내 휴학 → 복학시 재학증명서를 발급 받아 학군단에 제출
- 휴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포기서약서 학군단에 제출

04 학사예비장교를 포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관리 학군단에 비치되어 있는 학사예비장교 포기서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군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05 학사예비장교는 재학 중 무엇을 하면 되나요?

학사장교 제도는 대학 재학기간 중에는 학업에만 집중하고 졸업 후 교육을 받고 임관하는 제도로 재학중에는 별도의 훈련은 없으며, 연 2회(전반기·후반기) 학군단 소집교육에 참석하고 4학년은 아래 일정에 따라 측정을 받으면 됩니다.

☞ **체력검정 : 국민체력100 인증서(서울시9988 추가 인증가능) 제출**
☞ **신체검사 : 임관 전(4, 5학년) 1회 학군단 주관**

Tip

- **체력검정 합격자에 한해 입교 조치**
  - 불합격자는 3회 측정 기회 부여, 최종 불합격 및 불참시 해임조치
- **신체검사는 선발시 신체검사와 동일**

06 단기복무 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단기복무 장려금은 대학교 4학년 재학생에게만 지급되며, 학군교 입교 전 육군본부의 금액책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Tip

-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인원에 대해서만 지급 가능**
  - 신용불량, 연체자 등은 지급 불가
- **임관을 하지 못하고 포기 또는 해임되는 경우 장려금 전액 반납**

07 4학년을 조기 졸업할 경우 임관은 언제 하나요?

학사 예비장교 후보생은 조기졸업(6개월)을 해도 지원한 임관년도에 임관을 합니다.

Q&A 5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장교)

01 모집선발 일정 및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모집일정은 해당연도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원자격은 수업연한이 4년인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1~4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수학기간이 연장된 학과와 복수지원 등의 사유로 5년에 졸업하는 인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자격**

- 연령 : 임관일 기준 만 20~29세(군필자는 1~3세까지 합산)

군 복무기간	2년 이상	1 ~ 2년	1년 미만
합산나이	3세	2세	1세

- 학력 : 수업연한이 4년제인 국내대학 재학생
  (휴학인 경우 이듬학기 복학예정자는 지원 가능)

02 방송통신대, 사이버 대학교 재학 중에도 지원 가능한가요?

>>> 지원자격은 수업연한이 4년인 국내대학 재학생으로 학사학위 취득 가능한 대학에 한해 가능하며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 학사학위 취득시 가능합니다.

03 학년별로 선발하는 인원은 동일한가요?

>>> 학년별 선발하는 인원은 상이합니다.
매년 선발계획에 따라 학년별 인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4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에 선발이 되면 모두 장기복무선발이 되나요?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에 선발되었다고 하여 장기복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복무 지원은 임관 2~5년차까지 가능합니다.

05 임관 후에 가산복무 지원금을 반납 시 단축 복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가산복무 지원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복무에 가산하여 복무해야만 합니다.

06 가산복무 지원금은 얼마나 지급되나요?

>>> 가산복무지원금은 실제 등록금이 지급됩니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에 최종 선발되면 선발 연도 12월에, 1학년은 1학년 1·2학기 등록금이, 2학년은 1·2학년의 2년치 등록금이, 3학년은 1~3학년의 3년치 등록금이 일괄 지급되고 이후 지원금은 학기별로 지급됩니다. 4학년은 8개 학기 등록금이 일괄 지급됩니다.
단, 계절학기, 교환학생 선발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07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기 위해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

>>> 재정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재정보증보험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보험계약자가 재정보증인을 구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피보험자(국방부)는 법적시간, 비용 등을 절감하는 제도입니다.

08 졸업 전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반납하면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나요?

>>> 현역의 병적에 편입되기 전까지 본인 신청에 의한 선발 취소가 가능합니다.

09 휴학 중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당시 휴학 중이라도 합격 후에는 다음 해에 반드시 복학하여 임관연도 2월에 졸업 가능해야 합니다.

10 학사예비장교 후보생 합격 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장교) 선발에 지원하여 합격해야 합니다.

11 학교에서 별도 장학금을 받아도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장학금 수혜여부와 관계없이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12 학비 면제 대상자(교직원, 유공자 자녀, 장학금 수혜 등)는 가산복무 지원금을 얼마나 받나요?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가산복무 지원금은 군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므로 실제 등록금 전액이 지급됩니다. 단, 위 사항은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Tip

- **대통령령 제28423호(2017.11.14.)**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 제2조
  - "군 가산복무 지원금"이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로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군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13 최종 합격 후 다른 과로 변경 또는 다른 대학으로 편입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단, 교육기관이나 전공학부, 전공학과를 옮기기 전에 소속/관리대학 학군단을 통해 신청하고 선발부서 심의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4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에 선발되면 임관까지 어떤 훈련을 받나요?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학사사관 예비후보생 신분일 경우, 대학 시절에는 학업에만 전념하고 대학 졸업 후 양성교육을 통해 장교로 임관하게 됩니다. 다만,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신분 유지를 위해 해당 학군단(학군단이 없는 경우 지정된 학군단)에서 실시하는 연 2회 2시간 범위 내에서 소집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소집교육 시에는 체력 / 신체검사 실시, 성적(매학기 평균성적이 100분의 70점 이상) 확인 등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자격 유지조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군 관련 각종 교육을 진행합니다. 대학교 졸업 후에는 3월 초에 학생군사학교에 입교하여 장교 양성교육을 받고 7월 초에 육군 소위로 임관합니다.

Tip

- **대통령령 제28423호(2017.11.14.)**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 제9조(특별교육)
  - 국방부장관은 군 가산복무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기간 군에서 지정하는 특별교육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경비는 군에서 지급한다.

꿈과 미래를 향한 최고의 선택! 육군간부의 길을 알려드립니다.

Q&A 6

예비역의 현역재임용(장교)

01 모집선발 일정 및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평시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은 분기별 선발하며 지원 자격은 최근 3년 이내 전역한 예비역 중위, 대위로 재임용 후 2년 또는 3년 이상 복무가능한 자입니다..

☞ 모집 • 선발일정(선발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일정은 공고문 참조)

구분	공고	접수	신체검사	면접평가	최종발표	임 관
1차	1월	1~2월	3월	4월	5월	6, 7, 8월(택1)
2차	4월	4~5월	6월	7월	8월	9, 10, 11월(택1)
3차	7월	7~8월	9월	10월	11월	12월, '27년 1·2월(택1)
4차	10월	10~11월	12월	'27년 1월	'27년 2월	'27년 3, 4, 5월(택1)

☞ **지원자격**

-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군인사법 제10조 1항]
- 3년 이내 전역한 예비역 장교로서 재임용 후 2년 또는 3년 이상 복무가능자
  * 재임용 후 2년 또는 3년 이내 연령정년 또는 근속정년 도달자는 지원 불가

Tip

- **임관 결격사유**(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또는 같은법 제5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02 현역 재임용자의 최초 부대배치는 어떻게 되나요?

>>> 재임용자가 희망하는 근무지역을 최대한 반영하여 선발하고 보직하되, 임무수행의 적시성과 전문성이 발휘되도록 보직합니다.

03 특전사 출신 예비역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특전사로 재임용하여 복무를 희망하신다면 특전사 재임용 선발과정에 지원바랍니다.

04 현역 재임용자도 복무연장·장기복무 지원 가능한가요?

>>> 재임용 후 3개월 복무자는 선발계획에 따라 지원 가능합니다.

Tip

- **군인사법 시행령 제3조**
  단기복무장교로서 장기복무/복무연장을 원하는 자는 장기복무 지원서 또는 복무연장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전형을 거쳐 선발

05 선발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 선발평가는 1차·2차와 최종선발 심의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1차 평가는 서류전형으로 지원자격 심의를 통해 합격자를 선발하고, 2차 평가는 현역 복무시 근무평정 및 표창, 개인 잠재역량, 체력검정, 면접평가가 진행됩니다. 최종 선발은 2차 평가결과와 신체검사, 신원조사, 지휘관 의견서 등을 반영하여 심의를 통해 선발합니다.

※ 선발평가 절차 및 방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고문을 참조하세요

☞ **1차 평가 : 지원자격**

- 전역일, 전역당시 계급, 근속정년 초과, 역종(예비역), 복수국적 여부 등

☞ **2차 평가 : 근무평정, 표창, 체력검정, 면접평가, 잠재역량**

- 근무평정(20점) : 군 복무기간 평정점수 종합
- 상 훈 (5점) : 군 복무기간 표창점수 종합
- 잠재역량 (5점) : 공통 및 병과별 요구 자격증
- 체력검정(20점) : 문체부 산하 국민체력인증으로 대체
- 면접평가(50점) : 대면면접

☞ **종합평가** : 1·2차 평가결과와 신체검사(합·불), 신원조사, 원소속부대 의견서 등을 종합하여 병과별 최종선발

06 선발평가간 별도의 가산점은 있나요?

>>> 병과별 해당하는 자격증·학위가 있는 경우 잠재역량 평가점수에 반영됩니다.

☞ **잠재역량 평가요소는 "자격화제도 직무수행분야 자격목록" 참조**
*** 모집공고문 붙임으로 제공**

07 선발 후 인사관리(보직, 경력, 평정 및 지휘추천)는 어떻게 하나요?

>>> 예비역의 현역재임용 제도 취지에 부합되게 보직관리, 경력관리, 평정작성 및 지휘추천 등의 인사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합니다.

☞ **보직관리**

- '임무수행 적시성과 전문성 발휘' 고려 적재적소 보직원칙 적용
  - * 선발과 보직의 연계성 유지로 적시성 보장

☞ **경력관리**

- 현행 경력관리 모델을 동일하게 적용
- 재임용자 특성 고려 단기복무자, 장기복무 선발자로 구분하여 적용
  - * 단기복무자는 전문성 고려 1개 직위 보직 원칙 적용, 경력관리 모델 미적용
  - * 장기 및 복무연장 선발자는 현역과 동일한 경력관리 모델 적용
- 장기복무/복무연장 선발된 자는 필수직위에 우선 보직, 개인경력 관리
  - * 경력관리 모델 적용이 제한되는 인원은 경력평가 심의에 의해 '개인에게 유리하게 평가'하여 불이익 최소화
- 경력평가는 전역 전 보직과 연계하여 환산 적용

☞ **평정작성 : 현역 및 재임용자 구분 없이 현행 평정제도 적용**

08 선발 후 인사관리(진급선발)는 어떻게 하나요?

>>> 예비역의 현역재임용 제도 취지에 부합되게 복무의욕 고취를 위해 계급별 최저복무기간 도달시 진급 기회를 부여합니다.

※ 재임용된 날부터 진급심사일까지 12개월 이상 복무한 경우에는 재임용 전·후 해당 계급의 복무기간을 더하여 진급 최저 복무기간에 충족시 진급 대상자에 포함

Tip

- **군인사법 제26조(진급 최저복무기간) ①항**

진급될 계급	최저 근속기간	계급별 최저복무기간
중 령	17년	소령으로서 5년
소 령	11년	대위로서 6년
대 위	3년	중위로서 2년

꿈과 미래를 향한 최고의 선택! 육군간부의 길을 알려드립니다.

Q&A 7

준 사 관

01 선발 일정, 선발 평가요소는 어떻게 되나요?

>>> 기술행정준사관 선발은 연 2회(전년도 12월, 6월), 회전익항공기 조종준사관은 연 1회(전년도 12월), 경력직항공운항 준사관은 연 1회(6월) 공문 및 공고문으로 하달/게시되고 있습니다.

☞ **선발일정(당해 연도 선발일정 반드시 확인)**

구 분	지원서 접 수	선발고사 (전공평가)	선발고사 결과발표	신체 검사	신원 조사	체력검정, 면접평가	최종선발 결과발표
일 정	12월/6월	1월/7월	2월/8월	2월/8월	2월/8월	3월/8월	3월/9월
비 고	인사 사령관	각 병과 학교장	인사 사령관	지역별 군병원	국군방첩 사령부	인사사령관	

☞ **선발 평가요소**

- 기술행정

구분	계	전공평가		복무평가				체력 검정	상훈	신체 검사	신원 조사
		필기	실기	근무 경력	자격증	평정	면접				
배 점 (점)	100	10	30	10	5	30	10	5	가점	합·불	심의 결정

- 회전익항공기 조종준사관

구 분	계	1차 평가(25)			2차 평가 (75)				
		간부선발 도구	국사 평가	영어 평가	체력 검정	자격증	면접 평가	신체 검사	신원 조사
배 점 (점)	100	(20)	5 (공인성적)	20 (공인성적)	20	5	50	합·불	심의 결정

※ 영어 / 한국사 평가는 공인 성적(국내성적, 정시시험만 인정) 제출로 대체
※ 간부선발도구는 영역별 합격자를 대상으로 1차 평가만 적용(2차 평가시 미적용)

- 경력직항공운항 준사관

구분	계	조정능력평가		면접	평정	체력검정	신체검사	신원조사
		필기	실기					
배 점 (점)	100	30	35	20	10	5	합·불	심의 결정

☞ **통·번역 준사관은 선발계획 없습니다.**

02 선발인원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 인사참모부 인력계획과에서 부대계획 및 손실판단 소요 등을 고려 선발공석을 인사사령부에 하달하면, 인사사령부 장교·군무원선발과에서 공석에 맞는 선발계획을 작성 하달합니다.

☞ 인참부 인력계획과 : 특기별 공석 소요 작성 후 인사사령부로 공문 하달
☞ 인사사령부 장교·군무원선발과 : 모집선발 계획 작성 추진

03 기술행정 준사관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원사 또는 상사로서 2년 이상자로 연령은 임관일 기준 만 50세 이하인 사람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04 기술행정 준사관 근무경력 인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기술행정 준사관의 근무경력평가는 1차 전공평가 합격자에 한해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근무경력·세부 배점기준(당해 연도 선발공고문 참고)

평가요소	배 점 기 준
근무경력 (10점)	● 지원특기 분야 근무경력만 적용(전 계급)

구분	20년 이상	19~20년	17~18년	15~16년	13~14년	11~12년	9~10년	7~8년	5~6년	2~4년	1~2년	1년 미만
배점(점)	10	9.5	9	8.5	8	7.5	7	6.5	6	5.5	5	2.5

05 회전익 항공기 조종 준사관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회전익 항공기 조종 준사관 선발의 지원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인원으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자

☞ **공통**
- 군인사법 제10조 ①항의 임관 자격을 가진자
- 군인사법 제10조 ②항의 임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만 20세 이상, 고교 이상 학력 소지자는 현역(간부/병), 군 필자, 군 미필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함.**

*** 의무복무 미만료 현역(간부·병)도 지원 가능**
(군 가산 복무 중인 현역은 지원금 반납여부 해당부서에 확인 필요)

☞ **임관 후 의무복무기간 10년**

06 회전익 항공기 조종 준사관은 라식(LASIK) 등 각막 시술자도 지원이 되나요?

>>> 지원은 가능하지만, 군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합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체검사 관련 육규 161에 의하면 「각막 성형 또는 LASIK, LASEK, PRK 각막이식, 드림렌즈 등」을 포함하여 각막의 굴절률을 변화시키기 위한 모든 시술 및 처치 치료 또는 그 병력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PRK, LASIK, LASEK, 스마트(스마일)라식의 경우, 수술 후 3개월이 경과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6. 굴절” 및 “7. 원거리시력” 등 타 조항에서 합격한다면 불합격조건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신체검사 결과로 합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군병원(수도병원·대전병원 건강관리과)에 문의**

07 회전익 항공기 조종 준사관 한국사, 영어 성적 배점은 어떻게 되나요?

>>> 한국사, 영어 성적 배점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한국사 성적 배점**

구분	심화등급 (1 ~3급)	4등급	5등급	6등급	미제출
배 점 (점)	5	4.5	4	3.5	0

- 성적 미제출자도 지원 가능하나 점수는 0점 부여
- 성적 인정 기간 : 4년(지원서 접수일 기준)

☞ **영어 성적 배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배 점		20	19	18	17	16	지원불가
TOEIC		955 이상	954~910	909~855	854~795	794~700	699 이하
TEPS		437 이상	436~379	378~339	338~306	305~264	263 이하
TOEFL	25년까지	112이상	111~106	105~99	98~90	89~79	78이하
	26년이후	6	5.5	5	4.5	4	3.5이하

- 성적 인정 기간 : 2년(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7년 선발부터 5년 적용
- 성적은 국내 정기시험만 인정

※ 한국사 / 영어 성적 배점은 변경 가능하므로 당해 연도 공고문 참고

08 회전익 항공기 조종 준사관 선발 후 교육은 어떻게 받나요?

>>> 회전익 항공기 조종 준사관으로 선발되면 학생군사학교에 입교하여 3주간 장교화 과정을 수료해야 하며 이후 항공학교에서 평균 31주간 비행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육군 준위로 임관합니다.

Tip
- **현역 합격자 중 학생군사학교 및 항공학교 퇴교시 원 신분으로 복귀**

09 경력직 항공운항 준사관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회전익항공기 조종사 중에서 비행경력이 300시간 이상인 자로서 현역은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로서 현역복무 중인 자, 예비역은 임관예정일 기준 전역 3년 이내인 자가 지원 가능합니다.

10 경력직 항공운항 준사관 선발 후 교육 및 처우는 어떻게 되나요?

>>> 별도의 교육없이 항공학교장 주관 임관식 행사 후 야전 항공부대 배치 임무 수행을 하게 됩니다.

제 3 장

부사관 모집

꿈과 미래를 향한 최고의 선택! 육군간부의 길을 알려드립니다.

Q&A 1

민간부사관(남·여)

01 부사관 지원 가능한 시기 및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민간부사관은 연간 모집계획에 따라 약 연 4회로 나누어 모집(인력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및 선발하므로 접수시기에 맞춰 국방통합모집포털 홈페이지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격은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 고등학교 재학생은 임관일 기준 졸업이 가능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중학교 졸업자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취득자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령조건은 임관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만 29세 이하입니다.

Tip

- **군인사법 / 육군규정 107 인력획득 및 임관규정**

1. 연령 : 임관일 기준 만 18~29세 이하
   ※ 예비역 지원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1년 이상 3년 이하까지 (임관일 기준) 지원 연령 연장적용
2. 학력 : 고졸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임관일 이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졸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
3. 신체등위 : 3급 이상자 / 단, 군사경찰, 특임보병: 신체등위 2급 이상
4. 지원결격사유 : 군 인사법 제10조 2항 임관결격 사유 등 적용

02 부사관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국방통합모집포털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작성하고 지원합니다.
지원서 접수가 마감되면 개별적으로 안내되는 링크에 접속하여 온라인 인성검사를 실시합니다. 이후 평가일정 발표시 공개되는 신체검사, 면접평가 등 개인 일정을 확인하고 기타 평가에 응시하면 됩니다.
(기타 평가응시는 공고문 및 평가일정 안내문을 참고 바랍니다.)

Tip

● **인터넷 지원 절차**

1. 모집내용 확인(모집일정 및 지원자격 확인)
2. 지원서 작성(국방통합모집포털 홈페이지)
3. 1차 평가는 온라인 인성검사로 진행
4. 평가일정 발표 확인(국방통합모집포털 홈페이지)
   ※ 반드시 평가일정 발표시 안내된 평가일정을 참고
5. 기타 평가(직무수행능력평가,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체검사, 신원조사)
   ※ 직무수행능력평가 : 제출한 서류에 의한 평가, 구비서류를 국방통합모집포털 지원내역에서 기한내 파일 첨부
   ※ 체력검정은 국민체력100(문체부 산하) 및 서울체력9988 인증으로 결과를 국방통합모집포털 지원내역에서 제출
   * 유효기간 : 제출일 기준 12개월 이내 취득한 인증서
   ※ 면접평가는 대면면접을 진행하며, 면접은(추가) 사전안내된 일자 및 장소에서 실시
   ※ 신체검사는 사전안내된 일자 및 국군병원에서 진행하거나, 개인 희망 시 지정 민간병원에서 진행하고 결과지를 제출하여 대체가 가능
   ※ 신원조사는 개인이 직접 인터넷 접속 후 관련서류 첨부 및 작성 제출

03 고졸 예정자(3학년)도 부사관 지원이 가능한가요?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인 사람은 공고문에 명시된 임관일 이전에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Tip

● **지원자격**

1. 학력 : 고졸이상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임관일 전 고교졸업이 가능한 사람
2. 중학교 졸업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
3. 고등학교 재학생은 임관일 전 고교 졸업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필요.
4. 지원자격 제한 및 임관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군인사법 제10조 1, 2항

04 양성기관에서 신체질환으로 퇴교자는 재입영이 가능한가요?

>>> 부사관 최종합격자 중 양성기관에서 신체질환으로 퇴교 및 귀가조치 시 퇴교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입영(재입교)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 **부사관 학교 양성교육 중 신체질환에 의한 퇴교자는 완치 후 본인 희망 시 최기 교육기수에 재입교하도록 지역별 모집홍보관에게 연락하여 입교 시기를 통제받아야 함**

☞ **퇴교자는 재입영시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를 실시하여 임관결격사유 해당 유무를 검증 후 재입교 기회 부여**

☞ **재입교자가 다시 신체질환에 의한 퇴교 시에는 선발과정을 처음부터 거쳐야 함**

Tip

- **육군규정107(인력획득 및 임관규정)제4장, 제3절 민간모집**
  1. 단순 신체질환에 의한 귀가 및 퇴교자는 별도의 선발평가 없이 재입영(재입교) 가능. 다만, 신체검사 4급 이하는 재입영(재입교) 대상에서 제외.
  2. 신체검사 : 퇴교하여 치료 후 국군병원에서 신검 후 합격자에 한해 재입교
  3. 신원조사 : 질병퇴교 시 치료기간 2개월 미만자는 미실시, 이상자만 실시

05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 지급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민간부사관 임관자 전원입니다.

Tip

- **장려금 지급**
  - 1,000만원 일괄지급
  - 방법 : 임관자의 급여계좌로 재정관리단에서 중앙지급
    ※ 임관 전 부사관학교에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원칙으로 함.

06 신체검사 유효화제도란 무엇인가요?

>>> 체검사 유효화 제도란 과거에 응시한 육군 부사관 신체검사 결과를 육군 다른 선발과정에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육군 민간 남·여군, 임관시 장기복무, 군가산복무지원금 (1년가산), 군가산복무지원금(2년가산), 예비역의 현역재임용 부사관, 특전사, RNTC 선발 과정 간 적용이 됩니다.

과거 신체검사 결과를 활용하고자 하시는 경우 인터넷 지원 단계에서 과거 신체검사 활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과거 신체검사 결과는 1년 이내 실시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꿈과 미래를 향한 최고의 선택! 육군간부의 길을 알려드립니다.

Q&A 2

학군부사관후보생(RNTC)

01 RNTC 지원 가능시기 및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부사관학군단이 설치된 5개 대학(경북전문대, 전남과학대, 대경대, 동강대, 전주기전대)에 입학한 신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임관일을 기준으로 만 18~29세 이하인 학생입니다.

02 RNTC 선발 후 전문대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 네, 지원 가능합니다.
학군부사관 후보생 신분으로 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 지원이 가능하며, 합격하게 되면 학군부사관 후보생 신분으로 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03 2년제 대학 재학 중 RNTC 지원 가능한가요?

>>> 부사관학군단이 설치된 대학(경북전문대, 전남과학대, 대경대, 동강대, 전주기전대)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년제 학과 1학년, 3년제 학과 2학년, 4년제 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 전공학과와 관계없이 지원가능합니다.

04 RNTC 선발 절차 및 선발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 최초 3월부터 지원서 접수 후 신체·인성검사, 면접평가, 대학성적, 신원조회 (체력검정은 2020년부터 문화체육부 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인증서 취득 후 서면제출로 개선됨.)를 거쳐 전형에 합격 된 인원은 최종 7월에 학군부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되며, 선발 후 취소가 가능합니다.

05 RNTC 임관 및 입영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학기 중 교내교육과 방학 중 입영훈련을 통해서 소정의 임관 자격을 갖추게 되면, 대학 졸업년도 3월 1일에 육군 하사로 임관을 하게 됩니다. 입영절차는 해당대학 부사관학군단에서 별도로 안내하며, 군에서 지원하는 버스를 이용하여 입영 후,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교육이 진행됩니다.

06 선발평가 간 별도의 가산점은 있나요?

가산점은 각종 기능사 자격, 한국어, 한국사, 전산, 한자 자격증, 무도단증, 리더십, 영어 등 가산점 부여 기준에 의해 부여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자세한 부여 기준은 육군 부사관학교 및 각 학군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선발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7 학군부사관후보생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각 대학 여건에 맞는 장학금 및 기숙사 혜택이 주어지며, 전공이나 자격에 따라 임관시 다양한 특기 선택이 가능합니다. 임관 후 입영훈련 기간에 대한 호봉(4개월)이 반영되고, 후보생 기간에는 학군생활지원금('25년 기준 매월 18만원, 1·8월 제외), 후보생 부교재비('25년 기준 매월 약 7만원)가 지원되며, 방학 중 실시되는 3주 입영 훈련 시 훈련비(약 92만원)가 지급됩니다. 각종 피복류 및 학습에 필요한 용품들이 무상으로 지급되며, 전·사적지답사 등 다양한 대외 활동의 기회가 제공됩니다.
학군후보생은 군 복지시설 및 제휴시설 이용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대학 졸업과 동시에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학위취득과 취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으며, 임관성적 85% 이상 인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심의 후 임관시 장기복무자로 선발됩니다. ('25년 全 특기로 확대)

꿈과 미래를 향한 최고의 선택! 육군간부의 길을 알려드립니다.

Q&A 3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1년 가산)

01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전문대학 이상 2년제 대학은 2학년(3년제는 3학년, 4년제는 4학년) 1학기 재학 중인 사람, 대학원생은 수업연한이 2년인 대학원은 2학년 1학기 재학 중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 **세부지원자격**

- 임관일 기준 만 18~29세 이하
  (예비역은 군 복무기간 고려 1~3세까지 연장적용)
- 신체등위 3급 이상, BMI 등위 2급 이상
  (BMI 3급도 지원가능하나 선발위원회에서 합·불 여부 판정)
- 병과 및 특기별 요구되는 신체조건이 각기 다름.
  *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고
-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미해당자)

02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불합격시 민간부사관 지원은 어떻게 하나요?

>>> 인터넷 국방통합모집 포털(m-recruit.mnd.go.kr)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국방통합모집 포털』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육군』클릭 → 『지원서 접수』클릭 → 지원과정 선택 및 작성**

03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본인 희망에 따라 현역의 병적에 편입되기 전까지는(임관 전까지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후(임관 후) 의무복무 가산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Tip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대통령령 제28423호)

선 발 취 소 사 유		지원금 반납여부
1.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2.	음주운전, 상습도박, 성범죄 행위 등 품행이 불량한 경우	○
3.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전 학년 평균 성적이 100분의 70미만인 경우)	○
4.	선발권자의 허가없이 교육기관이나 전공학부 또는 전공학과를 옮긴 경우	○
5.	휴학 또는 입영 연기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
6.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	○
7.	현역의 병적에 편입 되기 전까지 선발을 취소한 사람	○
8.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후 의무복무 가산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
9.	재정보증 가입이 불가한 사람	○
10.	사망한 경우	심의대상
11.	군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한 결과 자연재해 또는 전·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부사관으로 임용되거나 복무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심의대상
12.	임관 후 의무복무기간 중 군인사법 8조에 따른 현역정년에 해당되어 전역한 경우	심의대상
13.	개인의 고의가 아닌 예측 불가능한 사고나 질병으로 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없게된 경우	심의대상
14.	입영 신체검사 결과 2회 이상 귀향 처분을 받은 사람	○
15.	학위 미취득자	○
16.	정례 신체검사 미실시자	○

04 대학 성적은 어느 정도 되어야 지원 / 임관이 가능한가요?

>>> 대학 성적은 평균 70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최종 입영 시는 선발 이후 매 학기 평균 70점 미달 및 졸업 불가시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Tip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대통령령 제28423호)

선 발 취 소 사 유		지원금 반납여부
1.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2.	음주운전, 상습도박, 성범죄 행위 등 품행이 불량한 경우	○
3.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전 학년 평균 성적이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	○
4.	선발권자의 허가없이 교육기관이나 전공학부 또는 전공학과를 옮긴 경우	○
5.	휴학 또는 입영 연기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
6.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	○
7.	현역의 병적에 편입 되기 전까지 선발을 취소한 사람	○
8.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후 의무복무 가산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
9.	재정보증 가입이 불가한 사람	○
10.	사망한 경우	심의대상
11.	군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한 결과 자연재해 또는 전·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부사관으로 임용되거나 복무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심의대상
12.	임관 후 의무복무기간 중 군인사법 8조에 따른 현역정년에 해당되어 전역한 경우	심의대상
13.	개인의 고의가 아닌 예측 불가능한 사고나 질병으로 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없게된 경우	심의대상
14.	입영 신체검사 결과 2회 이상 귀향 처분을 받은 사람	○
15.	학위 미취득자	○
16.	정례 신체검사 미실시자	○

05 양성교육 중 퇴교시 가산복무 지원금은 반납해야 하나요?

부사관 양성교육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신분으로 교육 중 퇴교자는 가산복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 **퇴교사유**

- 신체 또는 정신상의 결함으로 부사관으로 임관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
- 성적저조, 자진 퇴교자
- 임관 결격사유 해당자

Tip

- **임관 결격사유**(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2의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06 불합격자는 별도 선발평가 없이 민간부사관으로 임관할 수 있나요?

>>> 별도 선발평가 없이 민간부사관으로 임관할 수 없습니다.

07 가산복무 지원금은 얼마나 지급 되나요?

>>> 가산복무지원금은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학기간 중 생활비로 지급됩니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에 최종 선발되면 선발 연도 12월에 2년제 2학년, 3년제 3학년, 4년제 4학년 1·2학기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활비로 학교를 통해 개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08 체력검정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 “국민체력100” 또는 “서울체력9988”로 대체합니다.
지원서 접수 첫날 기준 1년 이내 발행한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09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합격 시 입대는 언제 하나요?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당해 연도 선발 후 다음 연도 육군부사관학교 교육 일정에 의해 확정됩니다.

10 양성교육 중 신체질환으로 퇴교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 자격이 취소 되는지, 이때 가산복무 지원금은 반납해야 하나요?

>>> 단순 신체질환으로 귀가(퇴교)된 인원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신분을 취소하지 않으며, 퇴교일로부터 1년 이내 1회에 한해 재입영(재입교) 기회를 부여하고 이 경우 가산복무 지원금은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재입교 후 다시 신체질환으로 귀가(퇴교)시에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신분이 취소되며 가산복무 지원금은 반납해야 합니다.

☞ 단순 신체질환으로 귀가(퇴교)된 경우 조치사항

(육규 107 인력획득 및 임관규정 제61조에 의거)

- 단순 신체질환에 의한 귀가 및 퇴교자는 별도의 선발평가 없이 재입영(재입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검사 4급이하 신체 부적격자는 재입영(재입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신체질환자는 1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입영 기회를 부여합니다.

11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시 4년만 복무 가능한가요?

>>>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은 선발취소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희망에 의한 가산복무지원금 반납 후 4년만 복무는 불가능합니다.
현역의 병적에 편입되기 전까지는(임관 전까지는) 본인 희망에 따라 선발을 취소 가능하며,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후(임관 후)에는 가산복무 지원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복무에 가산하여 복무해야만 합니다.

꿈과 미래를 향한 최고의 선택! 육군간부의 길을 알려드립니다.

Q&A 4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2년 가산)

01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전문대학 이상 2년제 대학은 1학년(3년제 2학년, 4년제 3학년) 1학기 재학 중인 사람, 대학원생은 수업연한이 2년인 대학원은 1학년 1학기 재학 중인 사람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 세부지원자격

- 임관일 기준 만 18~29세 이하
  (예비역은 군 복무기간 고려 1~3세까지 연장적용)
- 신체등급 3급 이상, BMI 등위 2급 이상
  (BMI 3급도 지원가능하나 선발위원회에서 합·불 여부 판정)
- 병과 및 특기별 요구되는 신체조건이 각기 다름.
  *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고
-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미해당자)

02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불합격 시 민간부사관 지원은 어떻게 하나요?

>>> 인터넷 국방통합모집 포털(m-recruit.mnd.go.kr)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국방통합모집 포털』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육군』클릭 → 『지원서 접수』클릭 → 지원과정 선택 및 작성

03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본인 희망에 따라 현역의 병적에 편입되기 전까지는(임관 전까지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후(임관 후) 의무복무 가산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Tip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대통령령 제28423호)

선 발 취 소 사 유		지원금 반납여부
1.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2.	음주운전, 상습도박, 성범죄 행위 등 품행이 불량한 경우	○
3.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전 학년 평균 성적이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	○
4.	선발권자의 허가없이 교육기관이나 전공학부 또는 전공학과를 옮긴 경우	○
5.	휴학 또는 입영 연기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
6.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	○
7.	현역의 병적에 편입 되기 전까지 선발을 취소한 사람	○
8.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후 의무복무 가산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
9.	재정보증 가입이 불가한 사람	○
10.	사망한 경우	심의대상
11.	군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한 결과 자연재해 또는 전·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부사관으로 임용되거나 복무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심의대상
12.	임관 후 의무복무기간 중 군인사법 8조에 따른 현역정년에 해당되어 전역한 경우	심의대상
13.	개인의 고의가 아닌 예측 불가능한 사고나 질병으로 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없게된 경우	심의대상
14.	입영 신체검사 결과 2회 이상 귀향 처분을 받은 사람	○
15.	학위 미취득자	○
16.	정례 신체검사 미실시자	○

04 대학 성적은 어느 정도 되어야 지원 / 임관이 가능한가요?

>>> 대학 성적은 전 학년 기준 평균 70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최종 입영 시는 전학년 매 학기 평균 70점 미달 및 졸업 불가시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Tip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대통령령 제28423호)

선 발 취 소 사 유	
1.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음주운전, 상습도박, 성범죄 행위 등 품행이 불량한 경우
3.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전 학년 평균 성적이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
4.	선발권자의 허가없이 교육기관이나 전공학부 또는 전공학과를 옮긴 경우
5.	휴학 또는 입영 연기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6.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
7.	현역의 병적에 편입 되기 전까지 선발을 취소한 사람
8.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후 의무복무 가산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9.	재정보증 가입이 불가한 사람
10.	사망한 경우
11.	군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한 결과 자연재해 또는 전·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부사관으로 임용되거나 복무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12.	임관 후 의무복무기간 중 군인사법 8조에 따른 현역정년에 해당되어 전역한 경우
13.	개인의 고의가 아닌 예측 불가능한 사고나 질병으로 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없게된 경우
14.	입영 신체검사 결과 2회 이상 귀향 처분을 받은 사람
15.	학위 미취득자
16.	정례 신체검사 미실시자

05 양성교육 중 퇴교시 가산복무 지원금은 반납해야 하나요?

>>> 부사관 양성교육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신분으로 교육 중 퇴교자는 가산복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 **퇴교사유**

- 신체 또는 정신상의 결함으로 부사관으로 임관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
- 성적저조, 자진 퇴교자
- 임관 결격사유 해당자

Tip

- **임관 결격사유**(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2의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06 양성교육 중 신체질환으로 퇴교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 자격이 취소되는지, 이때 가산복무 지원금은 반납해야 하나요?

>>> 단순 신체질환으로 귀가(퇴교)된 인원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신분을 취소하지 않으며, 퇴교일로부터 1년 이내 1회에 한해 재입영(재입교) 기회를 부여하고 이 경우 가산복무 지원금은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재입교후 다시 신체질환으로 귀가(퇴교)시에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신분이 취소되며 가산복무 지원금은 반납해야 합니다.

☞ **단순 신체질환으로 귀가(퇴교)된 경우 조치사항**
(육규 107 인력획득 및 임관규정 제61조에 의거)

- 단순 신체질환에 의한 귀가 및 퇴교자는 별도의 선발평가 없이 재입영(재입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검사 4급이하 신체 부적격자는 재입영(재입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신체질환자는 1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입영 기회를 부여합니다.

07 체력검정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 “국민체력100” 또는 “서울체력9988”로 대체합니다.
지원서 접수 첫날 기준 1년 이내 발행한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08 가산복무 지원금은 얼마나 지급되나요?

>>> 가산복무 지원금은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수학기간 중 생활비로 지급됩니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에 최종 선발되면 선발된 해와 다음 해의 매년 12월에 1·2학기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활비로 학교를 통해 개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09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시 4년만 복무 가능한가요?

>>>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은 선발취소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희망에 의한 가산복무지원금 반납 후 4년만 복무는 불가능합니다.
현역의 병적에 편입되기 전까지는(임관 전까지는) 본인 희망에 따라 선발취소 가능하며,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후(임관 후)에는 가산복무 지원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복무에 가산하여 복무해야만 합니다.

10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 부사관(2년가산)으로 합격시 입대는 언제 하나요?

>>>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 부사관은 당해 연도 선발 후 졸업 연도에 육군부사관학교 교육 일정이 확정된 후, 졸업 연도 2월 중 세부일정을 개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연락처 변경 시 각 지역 모집홍보관 및 육군인사사령부 부사관/병선발과(☎042-550-7153)로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꿈과 미래를 향한 최고의 선택! 육군간부의 길을 알려드립니다.

Q&A 5

임관시 장기복무 부사관

01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임관시 장기복무 부사관은 임관일 기준 만 18세부터 만 29세 이하인 사람이 지원 가능하며, 제대군인은 지원 가능 연령이 연장됩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해야 하며(임관일 기준 졸업가능자), 중학교 졸업자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이 있어야 지원자격이 부여됩니다.

* 임관시 장기복무 부사관은 필수 자격이 필요한 특기가 있습니다.
  - 의무특기 : 의무 관련 해당 자격/면허 소지자
  - 사이버정보체계운용, 사이버전문: 관련 전공·자격·경력 중 하나 이상 보유자

☞ **군(타군 포함)에 복무중인 간부는 부사관학교 입영일 이전 전역가능한 사람.**
군(타군 포함)에 복무 중인 병사는 전역일 상관없이 지원가능.

Tip

- 군인사법 / 육군규정 107 인력획득 및 임관규정
  1. 연령 : 임관일 기준 만 18~29세 이하
     ※ 예비역 지원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군 복무 기간에 따라 1세 이상 3세 이하까지 지원 연령 연장 적용
     -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2. 학력 : 고졸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임관일 이전 고교졸업 예정자, 중졸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
  3. 신체등위 : 3급 이상자 (특임보병: 신체등위 2급 이상)
  4. 지원결격사유 : 군 인사법 제10조 2항 결격사유 적용

02 지원 특기에 대한 관련 학과와 자격증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특임보병, 로켓정비 등 5개 특기는 관련 학력과 자격증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무특기의 경우 지원하는 세부 특기에 해당하는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소지해야 하고, 사이버정보체계운용, 사이버전문 특기의 경우에도 관련 전공, 자격, 경력 중 하나 이상을 보유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03 현역에 복무 중인 간부들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군(타군 포함)에 복무 중인 간부는 부사관학교 입영일 이전에 전역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04 현역으로 복무 중에 있는 병사들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현역병은 누구나(타군, 공익 등 병역대체복무자 포함) 지원 가능합니다.

05 선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1차 평가: 온라인 인성검사와 신원조사가 실시됩니다. 인성검사와 신원조사를 실시 완료한 인원이 다음 평가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2차 평가: 이전 전형 응시자에 한해 직무수행능력평가(서류제출), 체력평가, 신체검사, 면접평가, 신원조사를 바탕으로 한 심의를 통해 최종 선발됩니다.

Tip

☞ **평가요소 : 심의대상자 중 종합점수 고득점자 순 선발**

구 분	계	직무수행능력	체력평가	면접평가	신체검사	신원조사
드론/UAV운용 등 14개 특기	100	40	10	50	합·불	최종심의 반영
특임보병	100	20	30	50		

06 예비역에서 선발이 되면 양성교육은 어떻게 되나요?

>>> 임관시 장기복무 선발과정은 모든 선발인원이 부사관학교에서 동일하게 12주간 양성교육을 받게 됩니다.

07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여성도 지원특기에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 군복무를 하지 않은 여성도 지원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기수에 지원하려는 특기의 여군 계획 인원이 있는지 모집공고문을 확인한 후 지원하여야 합니다.

☞ **임관시 장기복무 부사관은 여군과 남군을 구분하여 선발하는 특기가 있고, 성별에 관계없이 통합 선발하는 특기가 있습니다.**

08 선발이 되면 의무복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임관시 장기복무 부사관 과정을 통해 선발되어 임관할 경우 의무복무기간은 7년입니다.

☞ **임관 후 의무복무기간은 7년으로 6년차에 각 부대 인사부서에 7년차 전역을 하겠다는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연 계급정년까지 복무하게 됩니다.**

09 선발이 되면 무조건 장기복무자로 복무 가능한가요?

>>> 선발이 되어 임관시까지 임관결격사유가 없다면 전원 장기복무가 됩니다.

☞ **군 인사법 제10조에 의거 임관결격사유에 해당자는 임관이 불가하며, 선발 후에도 이와 같은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면 장기복무자로 복무할 수 없습니다.**

10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 지급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로 임명되어 단기복무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꿈과 미래를 향한 최고의 선택! 육군간부의 길을 알려드립니다.

Q&A 6

현역부사관

01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임관일 기준 만 18~29세의 현역병으로 부사관학교 입교일 기준 일병~병장이며, 병장은 전역 일자가 부사관학교 입교일 이후여야만 합니다.

☞ 세부지원자격 (육군규정 107 인력획득 및 임관규정)

1. 연령 : 임관일 기준 만 18~29세 이하
   ※ 예비역 지원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대 만 32세까지(임관일 기준) 지원가능
2. 학력 : 고졸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입대일 기준 고교졸업이 가능한 자, 중졸자중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3. 신체등위 : 3급 이상자 / BMI등위 2급 이상자
4. 지원결격사유 : 군 인사법 제10조 2항 임관결격 사유 및 임관규정 적용

Tip

- **임관 결격사유**(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2의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02 연고지 복무 신청 가능 여부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부사관 연고지 복무 신청은 부사관학교 입교 후 수료 3주 전에 신청서를 받습니다.

Tip

- **부사관 연고지 복무제도 안내**
  - **연고지 복무제도란?**
    - 연고지에 소재하는 부대 복무를 희망하는 인원을 선발하여 복무하게 하는 제도
      * 사단급 이하부대 근무 (GOP 또는 GP 근무도 가능)
    - 연고지 개념 : 혈연이나 지연 또는 법률상으로 관계가 맺어진 곳
      * 출생지, 성장지, 학교, 현 거주지 등
  - **연고지 복무 신청 자격조건**
    - 출생지, 성장지, 학교, 직장소재지가 과거 2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어야 함.
    - 현 거주지는, 부모와 함께 거주할 경우는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본인 단독으로 거주시는 2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어야 함.
      * 증빙서류 :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 각 1부
  - **연고지 복무 신청 / 분류 : 육군부사관학교**
    ☞ 연고지 관련 기록이 허위로 판명시 선발 및 부대 배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03 유급지원병(전문병) 복무 중 지원이 가능한가요?

지원 가능합니다. 단, 전문병을 임기제부사관으로 임관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단기복무부사관 선발 심의위원회를 통해 임기제부사관으로 임관이 불가하다고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04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금 지급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육군 및 타군, 전환복무자로 복무한 후 전역한 2년 이내인 예비역 병장 및 하사로서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관 또는 임기제 부사관 중 임용 후 4년 복무가 확정된 자에게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전역 2년 이내 : 전역일자로부터 부사관 양성교육기관 입영일자
☞ 타군/전환복무자 : 해군, 공군, 해병, 의경, 전경, 수경, 소방, 교도요원

Tip

-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금 지급**
  ① 1,000만원으로 일괄지급
  ② 지급시기 : 하사 임관 후 3개월 이내
  ③ 방 법 : 임관자의 급여계좌로 재정관리단에서 중앙지급
  ※ 임관 전 부사관학교에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원칙으로 함.
- **시행일 : 2026. 7. 1. (군인사법 시행령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조정)**

05 임기제부사관에서 단기복무 전환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임기제부사관에서 단기복무 전환은 신분전환 기준 임기제부사관으로 임관 후 2개월 이상(합격 후 신분전환일 기준) 복무한 사람 중 지원 가능하며, 사·여단에서 추천하고 육본에서는 심의 후 선발하고 있습니다. (매년 선발일정 참고 신분전환일 확인)

☞ 지원서 접수 / 심의 시기 : 전환시기 4개월 전
☞ 심의시기 / 발표일 : 홀수월 20일 전후 / 홀수월 25일 전후
☞ 신분전환 시기 : 매년 선발일정 참고 확인 (매월 짝수일 1일 부, 연말 추가편성)
☞ 지원서류 : 부대의견서, 신원조사 필요서류(신용정보조회서) 등

06 임기제부사관에서 단기복무 전환 지원시 특기변경이 가능한가요?

희망특기 1지망은 원특기를 원칙으로 하나 일반보병(111) 등 13개 전투특기에 대해서는 1지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 3지망은 기수별 공고된 모든 특기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4지망은 선발소요가 많은 특기에 한하여 특임보병(113) 등 6개 특기만 지원 가능합니다. 이중 신체조건과 자격증을 보유해야 지원 가능한 특기도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원특기 외 1지망 가능특기**
- 일반보병(111), 특임보병(113), 전차승무(121), 장갑차(123), 야전포병(131), 포병표적(133), 방공무기운용(141), 인간정보(151), 전투공병(161), 공병장비운용(163), 전술통신운용(171), 화생방작전(211), 법무(461)

☞ **4지망 가능특기**
- 특임보병(113), 전차승무(121), 야전포병(131), 포병표적(133), 방공무기운용(141), 인간정보(151)

☞ **자격증이 필요한 특기 : 일반의무(411), 군종(471)**
- 물리치료사, 간호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 1·2급
- 군종 : 성례, 세례, 수계, 입교 1년 경과자(증명서 제출)

☞ **신체조건 필요 특기**
- 특임보병, 전차승무, 포병, 항공, 정보, 수송, 군사경찰

07 임기제부사관에서 단기복무 전환 평가요소는 어떻게 되나요?

평가요소는 부대추천과 부대의견서, 상훈, 근무경력(복무월수, 격오지근무, 특기) 및 격오지 근무, 신분화교육 등 5개 항목으로 총 배점은 100점으로 각 항목별 확인은 기변 보고된 사항만 반영되므로 기변보고 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Tip

- **평가요소별**

구 분	계	부대 추천	의견서	상훈	근무경력			신분화 교육
					복무월수	격오지근무	특기	
배점(점)	100.2	33	40	5	10	2	10	0.2가점

- **선발제외 대상**
  - 해부대 지휘관의견 중 2명 이상 "E" 부여시

Q&A 7

예비역의 현역재임용(부사관)

01 선발일정 및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평시 예비역의 현역재임용은 연 4회 선발하며 지원자격은 최근 6년 이내 전역(예정)하는 예비역 중사 이상 부사관 * 기준일 : 임관일

☞ **모집·선발일정**(당해 연도 선발일정 반드시 확인)

구분	공고	접수	신체검사	면접평가	최종발표	임관
1차	1월	1~2월	3월	4월	5월	6, 7, 8월(택1)
2차	4월	4~5월	6월	7월	8월	9, 10, 11월(택1)
3차	7월	7~8월	9월	10월	11월	12월, '27년 1·2월(택)
4차	10월	10~11월	12월	'27년 1월	'27년 2월	'27년 3, 4, 5월(택)

☞ **지원자격**

-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군인사법 제10조 1항]
- 전역 후 6년 이내의 예비역 부사관 중사로서 재임용 후 2년 이상 복무가능자
  * 용사 전역자는 지원 불가

Tip

- **임관 결격사유**(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2의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02 현역재임용의 선발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 현역재임용의 선발인원은 중기복무자 공석직위와 육아휴직 공석직위를 고려하여 3년간 운영인력에 필요한 인원으로 결정됩니다.

03 특전사 출신 예비역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네, 특전부사관으로의 지원도 가능 가능하고, 일반 육군의 병과(특기)도 지원 가능합니다.

* 특전보병(세부특기 : 112)선발은 특수전사령부에서 하고 있으니, 특수전사령부 홈페이지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4 재임용 지원 간 병과(특기) 변경이 가능한가요?

>>> 네, 전역 前 병과(특기) 외 해당 모집 공고에 선발하는 모든 병과(특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병과(특기)의 특성 고려 자격(자격증·학위) 검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자격이 필요한 병과(11개) : 정보, 공병, 정보통신, 병기, 병참, 수송, 화생방, 군사경찰, 재정, 공보정훈, 의정
* 자격이 필요없는 병과(5개) : 보병, 포병, 기갑, 방공, 인사

05 재임용 후 교육이 있나요?

>>> 네, 각 병과별 병과학교에서 1주일 간 재신분화 교육을 시행합니다. 병과(특기)를 변경한 경우 최기 보수교육(중·고급반)에 편성됩니다.

06 현역 재임용자도 복무연장, 장기복무 지원이 가능한가요?

>>> 현역 재임용자도 현역과 동일하게 복무연장, 장기복무 지원 가능합니다.

Tip

☞ **장기 및 복무연장 선발**

국방 인사관리훈령 제46조 16(장기 및 복무연장선발)

① 재임용자의 임용시부터 3개월 복무 이후 장기복무선발 및 복무연장 선발기회를 부여한다.

07 선발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 선발평가는 1차·2차 평가와 최종심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차 평가는 지원자격 검증이며, 2차 평가는 평정·상훈·잠재역량 검증 및 체력검정(국민체력인증서 제출), 면접 평가를 통해 계량화된 점수를 산출합니다. 최종심의는 1차·2차 평가결과와 신체검사, 신원조사, 지휘관 의견서 등을 종합하여 우수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 **1차 평가 : 지원자격**

- 전역일, 전역당시 계급, 근속정년 초과, 역종(예비역), 복수국적 여부 등

☞ **2차 평가 : 근무평정, 표창, 체력검정, 면접평가, 잠재역량**

- 근무평정(20점) : 군 복무기간 평정점수 종합
- 상훈(5점) : 군 복무기간 표창점수 종합
- 잠재역량(5점) : 공통 및 병과별 요구 자격증
- 체력검정(20점) : 문체부 산하 국민체력인증으로 대체
- 면접평가(50점) : 대면면접

☞ **종합평가** : 1·2차 평가결과와 신체검사(합·불), 신원조사, 원소속부대 의견서 등을 종합하여 병과별 최종선발

08 선발평가간 별도의 가산점이 있나요?

>>> 병과별 해당하는 자격증·학위가 있는 경우 잠재역량 평가점수에 반영됩니다.

☞ **잠재역량 평가요소는 "국방통합모집 포털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공고문 참조** (국방통합모집 포털 홈페이지 : https://m-recruit.mnd.go.kr)

09 선발 후 인사관리(보직, 경력, 평정)는 어떻게 하나요?

>>> 예비역의 현역재임용 제도 취지에 부합되게 보직관리, 경력관리, 평정작성 및 지휘 추천 등의 인사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합니다.

☞ **보직관리**

- '임무수행 적시성과 전문성 발휘' 고려 적재적소 보직 원칙 적용
  * 선발과 보직의 연계성 유지로 적시성 보장

☞ **경력관리**

- 현행 경력관리 모델을 동일하게 적용
- 재임용자 특성 고려 단기복무자, 장기복무 선발자로 구분하여 적용
  * 단기복무자는 전문성 고려 1개 직위 보직 원칙 적용, 경력관리 모델 미적용
  * 장기 및 복무연장 선발자는 현역과 동일한 경력관리 모델 적용
- 장기복무/복무연장 선발된 자는 필수직위에 우선 보직, 개인경력 관리
  * 경력관리 모델 적용이 제한되는 인원은 경력평가 심의에 의해 '개인에게 유리하게 평가'하여 불이익 최소화
- 경력평가는 전역 전 보직과 연계하여 환산 적용

☞ **평정작성 : 현역 및 재임용자 구분 없이 현행 평정제도 적용**

10 선발 후 인사관리(진급선발)는 어떻게 하나요?

>>> 예비역의 현역재임용 제도 취지에 부합되게 복무 의욕 고취를 위해 계급별 최저복무기간 도달 시 진급 기회를 부여합니다.
※ 재임용된 날부터 재임용 전·후 복무기간 산입

Tip

- **군인사법 제8조(현역정년) ①항**
  - 연령정년 : 하사 40세, 중사 45세, 상사 53세, 원사 55세

11 부대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 육군 인력운영 수준 고려 임의 분류됩니다. 다만, 부부군인 등은 고려될 수 있습니다.

12 군번은 어떻게 부여되나요?

>>> 전역 전 군번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기존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자의 군번 뒤에 붙는 'R+임관연도' 표기는 폐지되었습니다.

Tip

- **국방 인사관리훈령 제2장 제10절**
  - 재임용자는 전역 전 군번을 그대로 표기한다.
- **국.인사기획관리과-11322('25.07.07)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자 군번 표기방법(R군번) 변경(안내, 협조)**
  - **군번표기** : 전역 전 군번 + R + 임관연도 → **전역 전 군번**

※ 선발 일정을 포함한 선발에 관한 세부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희망 차수 공고문 확인

Q&A 8

임기제부사관

01 임기제부사관 임관시 급여 세부 지급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 병 복무기간을 포함하여 24개월 이상인 경우 하사 3호봉의 급여가, 24개월 미만의 경우 하사 2호봉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세부 급여 내역은 아래표를 참고 바랍니다. (하사 2호봉 / 2025년 기준 현황임)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실 지급액(공제금액 제외)		33,837,920	3,696,625	2,382,650	4,909,650	2,382,650	2,382,650	2,382,650	2,483,725	2,413,040	3,595,550	2,413,040	2,413,040	2,382,650
지급항목	총 급여액	37,302,470	3,992,935	2,678,960	5,205,960	2,678,960	2,678,960	2,678,960	2,780,035	2,678,960	3,891,860	2,678,960	2,678,960	2,678,960
	봉급	24,258,000	2,021,500	2,021,500	2,021,500	2,021,500	2,021,500	2,021,500	2,021,500	2,021,500	2,021,500	2,021,500	2,021,500	2,021,500
	시간외수당(정액금)	1,154,400	96,200	96,200	96,200	96,200	96,200	96,200	96,200	96,200	96,200	96,200	96,200	96,200
	직급보조비	1,980,000	165,000	165,000	165,000	165,000	165,000	165,000	165,000	165,000	165,000	165,000	165,000	165,000
	영외급식비	1,677,360	139,780	139,780	139,780	139,780	139,780	139,780	139,780	139,780	139,780	139,780	139,780	139,780
	시간외수당(실적금)	3,077,760	256,480	256,480	256,480	256,480	256,480	256,480	256,480	256,480	256,480	256,480	256,480	256,480
	명절휴가비	2,425,800	1,212,900	-	-	-	-	-	-	-	1,212,900	-	-	-
	정근수당	202,150	101,075	-	-	-	-	-	101,075	-	-	-	-	-
	성과상여금	2,527,000	-	-	2,527,000	-	-	-	-	-	-	-	-	-
공제항목	총 공제금액	3,464,550	296,310	296,310	296,310	296,310	296,310	296,310	296,310	265,920	296,310	265,920	265,920	296,310
	소득세	294,030	24,020	24,020	24,020	24,020	24,020	24,020	24,020	25,950	24,020	25,950	25,950	24,020
	지방소득세	29,37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590	2,400	2,590	2,590	2,400
	일반기여금	2,070,480	172,540	172,540	172,540	172,540	172,540	172,540	172,540	172,540	172,540	172,540	172,540	172,540
	건강보험료	949,140	86,300	86,300	86,300	86,300	86,300	86,300	86,300	57,480	86,300	57,480	57,480	86,30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1,530	11,050	11,050	11,050	11,050	11,050	11,050	11,050	7,360	11,050	7,360	7,360	11,050

*시간외수당(실적금)은 월 28시간 기준 충족시 기준액 현황임
*성과상여금은 전년도 10월 31일 이전 임관자 중 A등급 기준 현황임
*일반기여금이란 퇴직금 지급을 위해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임

☞ 개인별 호봉 및 임관일과 복무기간 산입에 따라 급여가 차등지급, 자세한 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953-6457)에 문의

02 임기제부사관 임관시 연장복무 개월수별 휴가(연가)는 며칠이 부여되나요?

임기제부사관 임관 후 휴가(연가)는 아래와 같이 부여됩니다.

구 분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휴가일수	11일	12일	14일	16일	18일	19일	21일

* 동일연도 임관 시에 적용, 임관 후 연도가 변경될 시 변경될 수 있음.
* 일반 부사관과 동일한 휴가 지침 적용

03 임기제부사관도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임기제부사관의 퇴직금은 군인연금법에 기준하여 지급되며 본인이 복무기간 중 납입한 기여금과 정부보조금을 포함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복무 개월수별 퇴직금액은 아래표를 참고 바랍니다. (2025년 기준)

개월수	퇴직일시금	개월수	퇴직일시금	개월수	퇴직일시금
6개월	2,005,000	13개월	4,345,000	20개월	6,684,000
7개월	2,339,000	14개월	4,679,000	21개월	7,018,000
8개월	2,673,000	15개월	5,013,000	22개월	7,352,000
9개월	3,007,000	16개월	5,347,000	23개월	7,687,000
10개월	3,341,000	17개월	5,681,000	24개월	8,021,000
11개월	3,676,000	18개월	6,016,000	36개월	12,032,000
12개월	4,011,000	19개월	6,350,000	48개월	16,043,000

* 하사 2호봉 기준 퇴직수당으로 호봉승급에 따른 퇴직수당 변동 소요는 있음.
* 과세(소득세, 지방소득세) 미포함된 금액으로 실 지급액은 다소 차이가 있음.

☞ **개인별 퇴직금 수령액은 병 복무기간 산입신청일 / 기간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953-6474)에 문의**

04 임기제부사관 복무 후 전역을 하게 되면 동원훈련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 임기제부사관 임관 후 하사로 전역을 하게 되면, 간부로 동원훈련에 편성되어 6년간 동원훈련에 편성됩니다.
* 병 전역시에는 동원훈련 4년 + 예비군훈련 2년 편성

05 임기제부사관도 영외거주가 가능한가요?

>>> 임관 후 영내대기 기간 없이 바로 영외거주가 가능하며, 부대 여건에 따라 독신 숙소 제공이 가능할 경우 바로 영외거주가 가능합니다.

☞ 기혼자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대별 심의 후 군관사에 입주 가능
☞ 영외거주는 부대별 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영내·기타 시설물을 활용 독신숙소 등으로 제공 가능

06 출근 및 퇴근은 몇 시에 해야 되나요?

>>> 출근 및 퇴근은 병영생활규정을 준수하여, 08:30분 이전에 출근하고, 17:30분 이후에 퇴근할 수 있습니다.
(부대 특성 및 직책에 따라 출근 및 퇴근 시간은 조금 상이할 수 있음)

07 임기제부사관도 임관시 장려수당이 있나요?

>>> 임기제부사관으로 임관시에는 별도 장려수당은 없습니다.
* 단, 임관 후 1년이내 연장복무 48개월 신청시 1,000만원 장려수당 지급 ('25년 기준 지급금액)

08 임기제부사관 지원 가능한 시기 및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시기는 현역병 전역일 기준으로 1~6개월 전까지 선발권 부대(사·여단급)에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자격**

- 대상 : 현역병 * 상근예비역 지원 불가
- 연령 : 임관일 기준 만 18~29세 이하
- 학력 : 고졸 이상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소지자
  (중학교 졸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신체등급 : 3급 이상자 중 신장·체중 신체등위(BMI) 2급 이상자

☞ **결격사유 : 군인사법 제10조 2항 임관결격사유 및 육규 107 인력획득 및 임관규정 적용**

09 임기제부사관 선발 평가시 평가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직무수행 능력(교육훈련 성적), 부대추천, 체력평가, 신체검사, 신원조사, 면접평가(인성검사), 복수국적 조회, 임용 결격사유 조회를 실시하며, 해당 결과를 토대로 최종 선발심의를 실시합니다.

10 임기제부사관 선발 평가시 개인사정으로 체력측정이 제한될 경우 군의관 소견서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임기제부사관 선발은 간부 체력검정과는 다른 사안으로 최근 12개월 이내 해부대에서 측정한 체력검정 결과를 제출하거나 선발권 부대 통제하 별도 체력 측정을 실시해야 됩니다.

11 임기제부사관 지원시 임관하고자 하는 병과(특기)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 제한적으로 지원(임관) 가능합니다.
복무연장 18개월 이내는 병사 때 동일병과 내에서 가능하고, 18개월 이상은 모든 전투병과 내 세부특기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12 문신이 있는데 임기제부사관 선발이 가능한가요?

>>> 문신이 있는 지원자는 경도(문신의 면적은 가로 및 세로 최장축의 길이를 곱하여 계산한다, 문신의 합계면적이 12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선발이 가능합니다.
임기제부사관 선발 신체 검사시 문신 관련 검사를 실시하며, 신체검사 결과 3급 이상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13 임기제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임기제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에서 최대 48개월까지의 연장복무 기간 중 본인이 신청한 연장복무 기간이며, 추가 연장복무는 최대 48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속부대 승인 아래 가능합니다.

14 임기제부사관 임관 후 현 부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나요?

>>> 보직은 임기제 하사 보직을 원칙으로 하되, 제한 시 일반 하사 직위도 가능
* 일부 부대 및 직위에 한해 병 직위 보직 가능
*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하사 편제 직위에 필히 보직

15 임기제부사관도 당직근무를 서야 되나요?

>>> 임기제부사관의 근무편성은 부대특성, 가용인원, 경계 작전 소요 등을 고려하여 사.여단장급 지휘관 판단 하 부대 실정에 맞게 편성 가능합니다.

16 임기제부사관 신분화 교육 시기와 내용은 무엇인가요?

>>> 신분화 교육은 임관 전 작전사급 이하 지정된 신병교육대대에서 2주간 실시하며 교육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신전력, 군기강, 리더십, 전투기술 등의 요소를 평가

☞기타 각 군사령관이 임무와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교육 편성

17 임기제부사관도 장기복무 신청이 가능한지와 언제 신청 가능한지요?

>>> 임기제부사관으로서 48개월 복무기간이 확정된 자가 지원대상이며, 임관 3년차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18 임기제부사관 임관시 지급받는 피복과 지급절차는 무엇인가요?

>>> 임관이후 부대 군수지원계통으로 청구하여 지급됩니다.

☞ **지급피복**

피 복 류	계 급 장 류	미 지 급
전투복(1), 전투화(1), 모양말(2), 런닝백색T 및 갈색R형(각 1), 팬티갈색(2), 인식표/줄(2/1)	철제모장・약장・포제정장(각 1), 포제약장・포제병과휘장(각 3), 포제정장2형(2)	정복/근무복, 근무복잠바

☞ **신청방법**

- **임관부대에서 군수지원계통으로 청구 후 보급**
- **간부피복판매소에서 개인이 수령 가능(명령지 지참)**

19 단기복무 부사관과 임기제부사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단기복무 부사관은 4년의 의무복무 기간 동안 복무(임기제부사관 복무기간 포함)하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기제부사관의 경우 임관 후 본인이 신청한 연장복무 기간만큼 복무 후 전역을 하며, 단기복무 부사관과 동일한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단, 총 연장복무 기간 48개월 확정된 자는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 등 동일하나, 근무평정의 경우 병 직위 보직자(18개월 이내자)와 하사 직위 보직자의 경우 평정집단 구성이 상이)**

☞ **단기복무 부사관과 임기제부사관 모두 군인사법상 하사의 신분입니다.**

Q20 임기제부사관 추가 연장복무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임기제부사관 추가 연장복무는 총 4회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관시 ~ 임관 24개월 : 1회 신청 시 2개월 이상
* 단, 추가 연장복무 기간은 총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추가 연장복무 기간이 23개월인 경우 1개월 지원 가능

☞ 임관 25개월 ~ 임관 48개월 : 1회 신청 시 12개월
* 24개월까지 연장복무를 3회 신청 후 추가로 36개월만 신청한 경우, 총 4회 연장복무를 신청하였으므로 이후 48개월 연장복무 신청 제한, 단, 36개월이상 신청시 임관일로부터 18개월 전에 필히 신청

☞ 추가 연장복무는 연장복무 만료(전역)일 2개월 전 국방인사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신청하며, 제한 시 중대장, 행정보급관 및 인사담당자에게 신청하여 인사사령부 부사관운영과로 공문 보고

Q21 임기제부사관은 전 병과(특기)를 대상으로 선발하나요?

>>> 임기제부사관은 17개 특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 병과(특기)를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단, 일부 병과(특기)는 신체조건을 미충족하거나, 면허 및 자격증을 미소지 시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체조건 제한 : 특임보병, 전차승무, 전차정비, 장갑차, 야전포병, 로켓포병, 인간정보, 영상정보, 항공운항, 수송운용, 이동관리, 항만운용, 군사경찰
* 면허 및 자격증 소지 : 수송운용, 차량정비

☞ 세부사항은 '26년 임기제부사관 모집 공고문을 참조

꿈과 미래를 향한 최고의 선택! 육군간부의 길을 알려드립니다.

제 4 장

군무원 모집

꿈과 미래를 향한 최고의 선택! 육군간부의 길을 알려드립니다.

Q&A 1

군 무 원

01 군무원 모집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군무원의 채용방법은 공개경쟁채용(이하 공채), 경력경쟁채용(이하 경채)이 있으며, 채용유형별 모집 횟수와 시기는 상이합니다. 공채는 연 1회, 일반군무원 경채는 연 2회, 일반임기제 및 전문군무경력관은 연 3회 정기 선발하며, 상황에 따라 수시 선발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국방통합모집포탈, 대한민국육군, 나라일터 등), 인트라넷(육군포탈)에 공지되는 채용 공고문을 확인하여 모집 시기와 채용인원, 직급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사참모부 인력계획과 : 연간 충원계획(공채 및 일반군무원 경채) 판단
☞ 인사참모부 군무원정책과 : 연간 충원계획(일반임기제/전문군무경력관) 판단

Tip

● 군무원 모집

- 모집공고

구 분	공채	경채				
		일반군무원		일반임기제/전문군무경력관		
		전반기 *지역인재 포함	후반기(필기면제)	1차	2차	3차
내 용	연 1회 (4월)	1회 (4월)	1회 (10월)	2월	4월	8월

※ 국방부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횟수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시험방법

구 분	공채	경채		
		일반군무원	일반임기제	전문군무경력관
내 용	1차 : 필기시험 2차 : 면접시험	1차 : 서류전형 2차 : 필기시험 * 후반기는 면제 3차 : 면접시험	1차 : 서류전형 * 일부직위 실기평가 2차 : 면접시험	1차 : 서류전형 * 일부직위 실기평가 2차 : 면접시험

*단, 일반군무원 경채 '지역 인재'는 1차 필기시험, 2차 서류전형, 3차 면접시험으로 시행함

02 군무원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군무원 공채시험의 응시에는 학력, 경력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일부 직렬(사서, 사이버 등 10개 직렬*)을 제외하고는 자격증 없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채는 채용 직위별로 공고된 세부 응시자격(군경력, 군(공)무원경력, 자격·면허, 학위, 학교장 추천 등)에 해당되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 공채 소요 및 경채 군무원 응시자격 심의·승인
☞인사참모부 인력계획과/ 군무원정책과 : 공채 소요 및 경채 군무원 응시자격 판단

Tip

● **자격증 필수 직렬** (10개)
사서, 사이버, 항해, 약무, 병리, 방사선, 치무, 재활치료, 의무기록, 영양관리

① **단, 자격증 소지자는 가산점 적용 : 32개 직렬**(6급 이하 공채만 해당)

• 가산점 적용대상 직렬

기술분야 직군(32개 직렬)
토목, 건축, 시설, 환경, 전기, 전자, 통신, 전산, 지도, 영상, 일반기계, 금속, 용접, 물리분석, 화학분석, 유도무기, 총포, 탄약, 전차, 차량, 인쇄, 선체, 선거, 함정기관, 잠수, 기체, 항공기관, 항공보기, 항공지원, 기상, 기상예보, 의공

• 필기시험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을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

구 분	6·7급		8·9급	
가산대상 자격증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②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를 인정함** *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제18조(채용시험의 특전)

03 저의 근무경력이 지원하려는 직위의 자격요건에 해당될까요?

>>> 지원자의 근무경력이 응시하고자 하는 직위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류전형 심의에서 결정됩니다. 일부 지원자가 채용기관에 문의해 자격요건 해당 여부에 대해 미리 확인을 받고 지원하려는 경우가 있으나, 채용 실무자는 이에 대한 판단 및 답변이 제한됩니다.

Tip

- **본인의 근무경력이 지원하려는 직위의 자격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하면 됩니다. 서류전형 합격 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04 희망하는 근무지역을 선택할 수 있나요?

>>> 공채는 전국단위 모집으로, 최종합격자 본인의 희망에 따른 근무희망 지역(1~10순위)을 접수받아 부대분류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지역(예를 들면 수도권, 대도시 등)에 소요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최종합격 점수 등)을 통해 조정하게 됩니다.
경채(일반군무원·일반임기제·전문군무경력관)는 모집 공고시 공고된 지역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Tip

- **인터넷을 통한 지원서 작성시 선택하는 필기시험 장소는 근무지역과는 무관합니다.**

05 영어·한국사 공인성적이 없어도 응시 가능 한가요?

>>> 공채의 경우, 반드시 필기시험 전일까지 성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점수가 발표되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시험성적은 지원자가 제출한 공인성적으로 대체 되며, 별도의 시험은 없으므로 실제 필기시험일에는 영어·한국사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만 응시하게 됩니다. * 경채(지역인재 등)는 공인성적 불필요

☞ **영어 시험기관 : TOEIC, TOEFL, TEPS, G-TELP, FLEX 등**
※ 유효기간 : 응시 당해 연도부터 3년 이내 성적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
(예, 2026년 응시시 2023년 1월 1일이후 성적)

☞ **한국사 시험기관 : 국사편찬위원회**
※ 유효기간 : 폐지 (2024년 시험부터 제한 없음)

Tip

● **영어 성적 기준 점수**

시험 종류		응시계급별 기준점수		
		5급	7급	9급
토 익 (TOEIC)	기준점수	700점 이상	570점 이상	470점 이상
	청각장애 (2,3급)	350점 이상	285점 이상	235점 이상
토 플 (TOEFL)	기준점수	IBT 71점 이상	IBT 54점 이상	IBT 41점 이상
	청각장애	CBT 131점 이상	CBT 104점 이상	CBT 82점 이상
텝스 (TEPS)	기준점수	340점 이상	268점 이상	211점 이상
	청각장애	204점 이상	161점 이상	127점 이상
지텔프 (G-TELP)	기준점수	Level 2 65점 이상	Level 2 47점 이상	Level 2 32점 이상
플렉스 (FLEX)	기준점수	625점 이상	500점 이상	400점 이상
	청각장애	375점 이상	300점 이상	240점 이상

● **한국사 성적 기준 점수**

시험의 종류	응시계급별 기준등급		
	5급	7급	9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3급 이상	4급 이상

06 필기시험 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 직렬별 시험과목은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하며, 영어·한국사 과목은 공인시험 성적으로 대체합니다.
다만, 지역인재는 공인시험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

직군	직렬	계급	시험과목
행정	행정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헌법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법, 행정학
	사서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자료조직론, 도서관경영론, 정보학개론, 참고봉사론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자료조직론, 도서관경영론, 정보봉사론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자료조직론, 정보봉사론
	군수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법, 행정학, 경영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법, 경영학
	군사정보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정치학, 심리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심리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기술정보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정보체계론, 암호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암호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수사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교정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시설	토목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응용역학, 측량학, 토질역학, 재료역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응용역학, 측량학, 토질역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응용역학, 토목설계

직군	직렬	계급	시험과목
시설	건축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구조역학, 건축시공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시설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공기조화, 냉동공학, 기계열역학, 전기제어공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공기조화, 냉동공학, 기계열역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공기조화, 냉동공학
	환경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환경계획, 환경화학, 상하수도공학, 폐기물처리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환경공학, 환경계획, 생태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환경공학, 환경화학
정보통신	전기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전기자기학, 전기기기, 회로이론, 전력계통공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전기자기학, 전기기기, 회로이론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전기공학, 전기기기
	전자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회로이론, 디지털공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디지털공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전자공학, 전자회로
	통신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통신공학,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디지털공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통신공학, 전기자기학, 디지털공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통신공학, 전자공학
	전산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운영체제론, 데이터베이스론, 자료구조론, 컴퓨터네트워크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정보보호론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이버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정보보호론, 네트워크 보안, 소프트웨어공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정보보호론, 네트워크 보안
	지도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지리정보학(GIS), 측지학, 사진측량학, 응용측량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지리정보학(GIS), 측지학, 응용측량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지리정보학(GIS), 측지학
	영상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사진학, 영상학, 디지털방송기술, 칼라사진론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사진학, 영상학, 디지털방송기술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사진학, 영상학

직군	직렬	계급	시험과목
공업	일반기계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기계설계, 기계공작법, 재료역학, 동력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기계설계, 기계공작법, 재료역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기계설계, 기계공작법
	금속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금속재료, 금속가공, 주조공학, 재료역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금속재료, 금속가공, 주조공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금속재료, 주조공학
	용접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용접야금, 기계설계, 기계공작법, 재료역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용접야금, 기계설계, 재료역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용접야금, 기계설계
	물리분석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비파괴검사, 금속재료, 용접야금, 디지털공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비파괴검사, 금속재료, 용접야금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비파괴검사, 금속재료
	화학분석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분석화학, 공업화학, 화공양론, 기기분석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분석화학, 공업화학, 화공양론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일반화학, 분석화학
	유도무기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디지털공학, 재료역학, 레이저광학, 기하광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디지털공학, 재료역학, 레이저광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전자공학, 기계공학
	총포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재료역학, 디지털공학, 레이저광학, 광학기기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재료역학, 디지털공학, 레이저광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전자공학, 기계공학
	탄약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일반화약학, 화공열역학, 공업화학, 화공양론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일반화약학, 화공열역학, 화공양론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일반화약학, 화공열역학
	전차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기계열역학, 내연기관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내연기관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차량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내연기관, 기계열역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내연기관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인쇄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인쇄공학, 인쇄재료, 인쇄기계, 특수인쇄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인쇄공학, 인쇄재료, 인쇄기계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인쇄공학, 인쇄재료

직군	직렬	계급	시험과목
함정	선체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선박설계, 유체역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선박설계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선거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선박운용학, 보조기계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선박운용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항해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항해학, 선박운용학, 해상안전론, 선박기관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항해학, 선박운용학, 해상안전론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항해학, 선박운용학
	함정기관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선박기관학, 전기공학, 선박구조역학, 보조기계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선박기관학, 전기공학, 선박구조역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선박기관학, 전기공학
	잠수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잠수작업, 잠수물리, 잠수장비, 잠수의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잠수작업, 잠수물리, 잠수장비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잠수작업, 잠수물리
항공	기체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항공역학, 항공기기체, 항공기정비, 항공기제어장치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항공역학, 항공기기체, 항공기정비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항공기기체, 항공기정비
	항공기관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항공기동력장치, 항공역학, 항공기구조, 항공기정비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항공기동력장치, 항공역학, 항공기구조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항공기동력장치, 항공기정비
	항공보기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항공제어공학, 항공기기체, 디지털공학, 항공역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항공제어공학, 항공기기체, 디지털공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항공역학, 항공기기체
	항공지원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항공기장비, 항공기정비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항공기장비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자동차정비, 항공기장비
기상	기상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전자회로, 운영체제론, 기상측기 및 관측법, 디지털공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전자회로, 운영체제론, 기상측기 및 관측법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전자회로, 컴퓨터일반
	기상예보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일기분석 및 예보법, 기상역학, 물리기상학, 기후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일기분석 및 예보법, 기상역학, 물리기상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일기분석 및 예보법, 기상역학

직군	직렬	계급	시험과목
보건	의무기록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의무기록관리, 공중보건학, 의료관계법규, 의학용어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의무기록관리, 공중보건학, 의료관계법규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의무기록관리, 공중보건학
	의공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의공학, 디지털공학, 공중보건학, 전자회로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의공학, 디지털공학, 전자회로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의공학, 전자공학
	영양관리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영양학, 단체급식관리, 식품학 및 조리원리, 공중보건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영양학, 단체급식관리, 식품학 및 조리원리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영양학, 단체급식관리

☞ 경력경쟁채용 시험 과목

직군	직렬	계급	시험과목
행정	행정	5급	행정법, 헌법
		7급	행정법, 행정학
		9급	행정법, 행정학
	사서	5급	자료조직론, 도서관경영론
		7급	자료조직론, 도서관경영론
		9급	자료조직론, 정보봉사론
	군수	5급	행정법, 경영학
		7급	행정법, 경영학
		9급	행정법, 경영학
	군사정보	5급	국가정보학, 심리학
		7급	국가정보학, 심리학
		9급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기술정보	5급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7급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9급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수사	5급	형법, 형사소송법
		7급	형법, 형사소송법
		9급	형법, 형사소송법

직군	직렬	계급	시험과목
시설	토목	5급	응용역학, 측량학
		7급	응용역학, 측량학
		9급	응용역학, 토목설계
	건축	5급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7급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9급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시설	5급	공기조화, 냉동공학
		7급	공기조화, 냉동공학
		9급	공기조화, 냉동공학
	환경	5급	환경계획, 환경화학
		7급	환경공학, 환경계획
		9급	환경공학, 환경화학
정보통신	전기	5급	전기자기학, 전기기기
		7급	전기자기학, 전기기기
		9급	전기공학, 전기기기
	전자	5급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7급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9급	전자공학, 전자회로
	통신	5급	통신공학, 전기자기학
		7급	통신공학, 전기자기학
		9급	통신공학, 전자공학
	전산	5급	운영체제론, 데이터베이스론
		7급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9급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이버	7급	정보보호론, 소프트웨어공학
		9급	정보보호론, 네트워크 보안
	지도	5급	지리정보학(GIS), 측지학
		7급	지리정보학(GIS), 측지학
		9급	지리정보학(GIS), 측지학
	영상	5급	사진학, 영상학
		7급	사진학, 영상학
		9급	사진학, 영상학

직군	직렬	계급	시험과목
공업	일반기계	5급	기계설계, 기계공작법
		7급	기계설계, 기계공작법
		9급	기계설계, 기계공작법
	금속	5급	금속재료, 주조공학
		7급	금속재료, 주조공학
		9급	금속재료, 주조공학
	용접	5급	용접야금, 기계설계
		7급	용접야금, 기계설계
		9급	용접야금, 기계설계
	물리분석	5급	비파괴검사, 금속재료
		7급	비파괴검사, 금속재료
		9급	비파괴검사, 금속재료
	화학분석	5급	분석화학, 공업화학
		7급	분석화학, 공업화학
		9급	일반화학, 분석화학
	유도무기	5급	디지털공학, 재료역학
		7급	디지털공학, 재료역학
		9급	전자공학, 기계공학
	총포	5급	재료역학, 디지털공학
		7급	재료역학, 디지털공학
		9급	전자공학, 기계공학
	탄약	5급	일반화약학, 화공열역학
		7급	일반화약학, 화공열역학
		9급	일반화약학, 화공열역학
	전차	5급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7급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9급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차량	5급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7급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9급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인쇄	5급	인쇄공학, 인쇄재료
		7급	인쇄공학, 인쇄재료
		9급	인쇄공학, 인쇄재료

직군	직렬	계급	시험과목
함정	선체	5급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7급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9급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선거	5급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7급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9급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항해	5급	항해학, 선박운용학
		7급	항해학, 선박운용학
		9급	항해학, 선박운용학
	함정기관	5급	선박기관학, 선박구조역학
		7급	선박기관학, 선박구조역학
		9급	선박기관학, 전기공학
	잠수	5급	잠수작업, 잠수물리
		7급	잠수작업, 잠수물리
		9급	잠수작업, 잠수물리
항공	기체	5급	항공역학, 항공기기체
		7급	항공역학, 항공기기체
		9급	항공기기체, 항공기정비
	항공기관	5급	항공기동력장치, 항공역학
		7급	항공기동력장치, 항공역학
		9급	항공기동력장치, 항공기정비
	항공보기	5급	항공제어공학, 항공기기체
		7급	항공제어공학, 항공기기체
		9급	항공역학, 항공기기체
	항공지원	5급	자동차정비, 항공기장비
		7급	자동차정비, 항공기장비
		9급	자동차정비, 항공기장비
기상	기상	5급	전자회로, 기상측기 및 관측법
		7급	전자회로, 기상측기 및 관측법
		9급	전자회로, 컴퓨터일반
	기상예보	5급	일기분석 및 예보법, 기상역학
		7급	일기분석 및 예보법, 기상역학
		9급	일기분석 및 예보법, 기상역학

직군	직렬	계급	시험과목
보건	약무	5급	약제학, 약물학
		7급	약제학, 약물학
		9급	약제학, 약물학
	병리	5급	임상병리(조직병리학/임상화학/혈액학/임상미생물학/임상생리학), 공중보건학
		7급	임상병리(조직병리학/임상화학/혈액학/임상미생물학/임상생리학), 공중보건학
		9급	임상병리(조직병리학/임상화학/혈액학/임상미생물학/임상생리학), 공중보건학
	방사선	5급	방사선이론과 응용, 영상진단기술학
		7급	방사선이론과 응용, 영상진단기술학
		9급	방사선이론과 응용, 영상진단기술학
	치무	5급	치과보철학, 구강외과학
		7급	치과보철학, 구강외과학
		9급	치과보철학, 구강외과학
	재활치료	5급	물리치료학, 공중보건학
		7급	물리치료학, 공중보건학
		9급	물리치료학, 공중보건학
	의무기록	5급	의무기록관리, 공중보건학
		7급	의무기록관리, 공중보건학
		9급	의무기록관리, 공중보건학
	의공	5급	의공학, 디지털공학
		7급	의공학, 디지털공학
		9급	의공학, 전자공학
	영양관리	5급	영양학, 단체급식관리
		7급	영양학, 단체급식관리
		9급	영양학, 단체급식관리

※ 단, 지역인재 7급의 시험과목은 국어, 헌법, 영어, 한국사를 적용하고, 9급의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를 적용

<비고>

5급 이상의 경채 시험과목은 5급 시험과목으로, 6·7급의 경채 시험과목은 7급 시험과목으로, 8·9급의 경채 시험과목은 9급 시험과목으로 한다.

제 5 장

전문특기병 모집

꿈과 미래를 향한 최고의 선택! 육군간부의 길을 알려드립니다.

Q&A 1

전문특기병

01 전문특기병이란 무엇인가요?

>>> 육군에서 필요한 병 소요인원 중 특수한 자격·면허, 전공 또는 경력을 필요로 하거나 선발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별도의 지원자격이나 선발기준에 의해 선발 및 보충되는 모집병입니다.

☞ **선발방법**

- 병무청 모집 → 서류전형(병무청) → 면접/실기평가(육군) → 병무청 합격자 발표
- 직위에 따라 선발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Tip

- **전문특기병의 종류**
  - 카투사, 영어어학병, 프랑스어어학병, 스페인어어학병, 독일어어학병, 일본어어학병, 중국어어학병, 러시아어어학병, 아랍어어학병, 군사과학기술병, 유해발굴기록병, 유해발굴감식병, 체육선수, 의장병, 훈련소조교병, 특전병, 신호정보전자전운영병, 탐지분석병, 드론운용 및 정비병, 정보보호병, 사이버작전병, 화생방시험병, 방사능분석연구보조병, 지식재산관리병, 33경호병, 특수임무군사경찰, 모터사이클승무병 (MC군사경찰), 회계원가비용분석병, 영상콘텐츠디자이너병, 그래픽디자이너병, 사진콘텐츠디자이너병, 군악병, 기독교군종병, 천주교군종병, 불교군종병, JSA경비병, S/W개발병

02 카투사 지원자격 및 선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지원자격은 영어어학 종류별 요구되는 점수 이상 취득자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병무청에서 공개선발 행사 시 전산에 의한 무작위 공개선발로 선발됩니다.

☞ **어학종류별 지원자격**

TOEIC	TEPS	TOEFL IBT	G-TELP Level 2	FLEX	OPIc	TOEIC Speaking	TEPS Speaking
780점 이상	299점 이상	83점 이상	73점 이상	690점 이상	IM2 이상	140점 이상	61점 이상

☞ **지원서 접수 : 매년 9월경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예정**

* 지원기회는 개인별 1회만 가능(비선발시 차후부터 지원불가)

☞ **선발방법 : 어학점수 그룹, 입영희망월별 지원비율에 따라 무작위 전산선발**

☞ **공개선발 : 매년 11월경 병무청 주관으로 시행 예정이며, 전체 지원자중 일부 대상을 선정, 지원자 본인과 가족 참관 하에 난수 추첨 후 무작위 선발**

Tip

● **최근 5년간 평균 경쟁률** (입대 연도 기준)

구 분	평 균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경쟁률	8.4 : 1	9.5 : 1	8.7 : 1	7.3 : 1	7.6 : 1	8.7 : 1

03 어학병 지원자격 및 선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지원자격은 영어 어학종류별 요구되는 점수 이상 취득자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어학평가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합니다.

☞ 어학종류별 지원자격

구 분	TOEIC	TEPS	TOEFL IBT	G-TELP Level2	FLEX	TOEIC Speaking	TEPS Speaking	OPIc
영어 어학병	900점 이상	370점 이상	100점 이상	90점 이상	870점 이상	160점 이상	81점 이상	IH 이상
아랍어	아랍어권에서 1년 이상 거주, 대학 1년 수료 이상으로 아랍어 전공자							
중국어	新HSK 6급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정기 시험)							
프랑스어	DALF.C1 이상, 3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전공자 중 2년 이상 거주							
독일어	ZMP 중급 • GZ-C1 • TsetDaf TDN4 이상, 3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전공자 중 2년 이상 거주							
일본어	JLPT N1 150점 이상, JPT 935점 이상, SNULT(일본어) 80점 이상, FLEX(일본어) 950점 이상							
러시아어	2년 이상 유학, 3년 이상 거주, 토르플 1~4단계, 국내·외 4년제 대졸 이상 러시아어 전공자							
스페인어	DELE.C1 이상, 3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전공자중 2년 이상 거주							

☞ 선발절차

- 지원서 접수 : 병무청홈페이지
- 1차 선발 : 병무청 서류전형
  - * 영 어 : 200% 전산 무작위 선발(1차)
  - * 중국어 : 新HSK 6급 고득점자 순 200% 선발(1차)
  - * 일본어 : 300% 전산 무작위 선발(1차)
- 2차 선발 : 육군 어학평가(국방어학원)
  - * 영 어 : 통역(한국어 → 영어, 영어 → 한국어)
  - * 제2외국어 : 번역(한글 → 외국어, 외국어 → 한글), 통역(한국어 → 외국어, 외국어 → 한국어)
- 최종 선발 : 어학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계획인원만큼 선발(병무청 발표)

04 군사과학기술병은 무엇이며, 지원자격 및 선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군사과학기술병이란 병역의무간 전공과 연계하여 첨단과학기술군 건설에 기여하는 군사과학기술 전사로 미래 전장환경을 연구하는 전문연구요원입니다. 직위별 요구되는 전공학과의 석사학위 재학 이상인 자(석사 중퇴 제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직위별 관련 선발기준에 의해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합니다.

☞ **모집직위**

- 가상/시뮬레이션연구병, 고기동연구병, 군수융합연구병, 기술자료분석병, 드론(드론봇)연구병, 빅데이터분석병, 소프트웨어개발병, 신소재연구병, 에너지연구병, 유무인체계연구병, 인공지능연구병, 적층가공연구병, 첨단센서연구병, 초연결(통신)연구병, 사이버기술연구병

☞ **지원자격 : 모집직위별 요구되는 전공학과 석사학위 재학 이상인 자**

☞ **선발절차** * 직위별 평가기준은 병무청 모집공고 확인

- 지원서 접수 : 병무청홈페이지
- 1차 선발 : 없음.(병무청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 2차 선발 : 면접평가(육군미래혁신연구센터 군사과학기술연구대, 국군방첩사)
- 최종 선발 : 평가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계획인원만큼 선발(병무청 발표)

Tip

• 복무관리

– 임무수행 및 인사관리
  • 선발된 직위에서 전역시까지 보직, 개인PC, 책상, 사물함 등 연구를 위한 사무환경보장
– 병영생활
  • 군사과학기술병들간 동일생활관 편성(소수인원으로 편성 제한시 일반 병사들과 혼합 편성)
  • 야간 및 일과시간 연구여건 보장을 위한 근무편성 제외(연구 등 임무 없을 시 편성)
  • 교육훈련 반기 1회 참석(수준유지)
– 유연복무 및 혜택
  • 공무수행 시 대외활동 예산 지급(근무지에서 사복 착용 후 출발 가능)
  • 일과시간 중 휴대폰, 인터넷 사용(자료검색 및 업무협조 여건 보장)
  • 필요인원에 한하여 육군 메일 개성(연구자료 송·수신에 활용)
  • 군 복무간 연구한 산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장(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 전역 후 활용 가능)

꿈과 미래를 향한 최고의 선택! 육군간부의 길을 알려드립니다.

제 6 장

병과 / 특기 분류

꿈과 미래를 향한 최고의 선택! 육군간부의 길을 알려드립니다.

Q&A 1

병과 / 특기 분류

01 장교는 어떤 병과가 있나요?

>>> 육군의 장교 병과는 크게 기본병과(전투, 기술, 행정)와 특수병과(의무 5개, 법무, 군종)로 구분하며, 총 기본병과 17개, 특수병과 7개로 구분합니다.

☞ **기본병과는 전투병과 8개, 기술병과 5개, 행정병과 4개로 구분**
☞ **특수병과는 의무**(군의, 치의, 수의, 의정, 간호)**, 법무, 군종병과 7개로 구분**

Tip

● **육군규정 110 장교 인사관리규정**(군사특기별 관리)

- 병과특기 관리 : 병과특기 관리 개념은 육군의 직능에 따라 병종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부여한 특기이며, 기본병과와 특수병과 특기로 구분한다.
- 병과특기 구분

구 분		종 류	비 고
기본병과	전투병과	보병, 기갑, 포병, 방공, 정보, 공병, 정보통신, 항공	8개 병과
	기술병과	화생방, 병기, 병참, 수송, 군수	5개 병과
	행정병과	인사, 군사경찰, 재정, 정훈	4개 병과
특수병과		의무(군의, 치의, 수의, 의정, 간호), 법무, 군종	7개 병과

02 초임장교 양성과정별 분류대상 병과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구 분	병과 수	전투병과(8) (보병, 포병, 기갑, 방공, 정보, 공병, 정보통신, 항공)	기술병과(4) (병기, 병참, 수송, 화생방)	행정병과(4) (인사, 군사경찰, 재정, 정훈)	특수병과(7) (군의, 치의, 수의, 의정, 간호, 법무, 군종)
육사, 학군, 3사, 학사, 간부	17개	8개	4개	4개	1개 (의정)
특수사관	12개	2개 (정보,통신)		3개 (군사경찰제외)	7개

☞ **특수사관 후보생은 병과별로 모집 및 선발하므로 병과분류의 대상이 아닙니다.**

03 초임장교 병과분류는 어떻게 하나요?

학군·학사 초임장교 병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분류하기 위하여 전산 / 공개분류를 원칙으로 합니다. 병과분류 기준은 개인의 전공 및 군 경력, 자격증, 양성교육기관의 군사학 성적 등을 고려하여 병과별 임무에 적합한 인원을 선발합니다.

* 단, 병과분류간 인정하는 군 경력은 육군 동일 병과 내에서 복무경력 12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 **인사참모부 인력계획과 : 병과별 분류인원 판단**
☞ **인사사령부 인력획득계획과 : 초임장교 병과분류 기준 제공**

04 장교 병과분류는 언제·어디서 하나요?

장교과정 중 학군·학사장교, 간부사관 병과 분류는 임관 2개월 전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분류하며 학군장교는 1월, 학사장교 및 간부사관은 5월에 병과분류를 진행합니다. 3사 장교는 3사관학교에서 임관 2개월 전에, 육사장교는 3학년 2학기에 가분류 후 임관 2개월 전에 확정 분류합니다.

☞ **학군·학사장교·간부사관 : 인사사령부 병과분류 기준 적용**
  * 본인 희망 및 개인의 전공과 보유 자격을 고려하여 병과 분류
☞ **육군3사관학교·육군사관학교 : 학교 운영내규에 의거 병과분류**
  * 본인의 희망 병과를 토대로 분류하되, 조정이 요망되는 인원은 전공과목에 중점을 두고 각 평가요소를 계량화하여 분류한다.

Tip

- **육규 106 인력관리규정**(제4장 인력획득 판단)
  - 양성과정별 병과분류 책임 및 시기
    - 육사생도는 육사교장 책임하에 생도 3학년 2학기 말에 가분류하고 임관 2개월 전에 확정분류한다.
    - 3사생도는 3사교장 책임하에 임관 2개월 전에 분류한다.
    - 학군, 학사사관후보생은 학생군사학교장 책임하에 임관 2개월 전에 분류한다.
    - 특수사관 후보생(전문사관)은 병과별로 모집함으로 선발시 병과별로 선발한다.

05 부사관은 어떤 병과 세부 특기가 있나요?

부사관 병과 세부 특기는 장교의 병과 내에서 특정 기술 및 기능을 세분화한 것을 말하며, 전투병과 병과세부특기 23개, 기술병과 병과 세부 특기 19개, 행정병과 병과 세부 특기 6개, 특수병과 병과 세부 특기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병과 세부 특기는 국방모집포털 홈페이지(m-recruit.mnd.go.kr) [커뮤니티]-[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군사특기 구조**

병 과	병과 세부 특기	직능 특기	전문자격
장교	준사관, 부사관	장교, 부사관	

Tip

- **육군규정 112 부사관 인사관리규정**(제2장 특기관리)
  - 군사특기 개념 : 직위의 직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군사업무와 관련된 분야별 필요한 부호를 부여한 체계를 말한다.
  - 병과 세부 특기 : 병과내에서 특정기술 및 기능별로 세분화한 것을 말한다.
  - 직능특기 : 유형별 직무의 성격에 따라 분류한 특기를 말한다.
  - 전문자격 : 군 업무에 관련한 특정한 지식과 기술을 전문자격으로 하고, 자격을 구비한 자에게 부여하며, 교육 및 보직관리에 참고로 활용한다.
    - 일반 전문자격 : 병과 및 직능특기에 관련된 분야의 자격
    - 공인 전문자격 : 국가고시에 의한 공인자격 및 대통령, 장관, 참모총장이 인정하는 자격
    - 외국어 전문자격 : 외국어에 능통한 자로서 참모총장이 인정하는 자격

06 초임 민간부사관 특기분류 대상 특기는 어떤 것이 있나요?

'26년 1월 기준 전투병과 14개 특기가 대상입니다.

* 전투공병, 시설공병, 전술통신운용, 특수통신운용, 인간정보, 신호정보, 영상정보, 일반보병, 야전포병, 로켓포병, 포병표적, 전자승무, 장갑차, 방공무기운용

☞ **14개 전투특기 외에는 특기별 모집 및 선발되므로 별도의 특기분류 절차가 없습니다.**

07 초임부사관 특기분류는 어떻게 하나요?

>>> 부사관은 특기별로 선발을 하고 있으며, 민간부사관 일부 전투특기에 한하여 통합선발 후 특기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특기별 선발 시 기준은 개인의 전공(직무적성), 자격 면허, 신체조건 등 병과(특기)별 선발 전형에 따라 군의 인력소요를 고려하여 각 병과(특기)별 임무수행에 적합한 인원을 선발합니다.
전투통합특기의 특기분류는, 부사관학교 입교 후 교육 8주차에 특기분류를 진행하고, 개인별 희망(1~6지망)특기와 개인의 전공 및 군경력, 자격증, 양성교육기관의 성적 등을 고려하여 분류합니다.

☞ **인사참모부 인력계획과 : 초임 부사관 선발소요에 따라 연간 특기별 선발 인원 판단**
☞ **인사사령부 인력획득계획과 : 전투통합 특기대상 특기분류 기준 제공**

Tip

- **육군규정 107 인력획득 및 임관규정**
  - 민간모집 부사관 및 부사관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 등은 남군·여군으로 선발전형을 구분하여 모집 및 선발하고, 전 병과 세부 특기별로 모집한다.

- **획득정책과-560('22.4.26.) 부사관 획득률 향상을 위한 민간부사관 선발방법 개선 검토(안)**
  - 적용시기 : 22-3기 선발 민간 부사관부터 적용
  - 선발방법 : 1. 특기별 모집(기존 선발방법), 2. 통합선발 후 임관시 특기분류

08 병과(세부특기) 분류인원(공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장교(학군, 학사) 및 부사관은 연초(1월) 계급 및 병과 별 부족 소요를 판단하여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에서 병과(특기)별 인원을 판단합니다.

Tip

- **육군규정 106 인력관리규정**(제2절 장교 병과분류)
  - 소요판단 : 인사참모부 인력계획과에서 F+1연도 장교 임관인원 파악과 계급 및 병과별 정원(중기) 대비 연말 부족소요 판단 및 양성과정 및 복무구분별 병과분류, F+1년말 병과별 위관 인력운영 수준 고려하여 조정
- **육군규정 106 인력관리규정**(제4절 부사관 군사특기 재분류 소요판단)
  - 소요판단 : 인사참모부 인력계획과에서는 정보작전지원참모부(부대계획과)로부터 당해 연도 계급별 병과특기별 정원을 획득하여 당해 연도 정원과 손실, 획득인원을 고려하여 병과특기별 연말병력을 판단하며 당해 연도 정원대비 연말부족인원을 군사특기 재분류 소요를 조정

09 병과(특기) 분류시 자격이나 전공이 필요한가요?

>>> 장교 및 부사관 병과(특기)는 병과별 임무를 고려하여 전공이 필요한 병과(특기)와 전공이 필요하지 않은 병과(특기)를 구별하여 병과(특기)를 구별하게 됩니다. 이때 전공 및 군경력 등 전공 경력, 자격증, 양성기관 교육성적 및 신체조건 등을 고려하여 병과(특기)를 분류합니다.

☞ **국방모집포털 홈페이지(m-recruit.mnd.go.kr) [커뮤니티]-[자료실]에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병과 별 연계 전공 및 자격증 확인 가능**

10 병과(특기)별 관련 전공(계열)학과 및 자격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추가도 가능한가요?

병과(특기)별 관련 전공(계열)학과 및 자격의 선정은 병과의 임무를 고려하여 병과 관련 교육기관과 정책 부서에서 각 병과와 연관성 있는 전공(계열)학과 및 자격증 소요를 받아 반영합니다. 특히 전공(계열)학과의 병과 관련 여부는 전공명 외에도 교육계열(표준분류체계) 등이 함께 고려되어 결정되며, 전공별 교육계열은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공학과 및 자격 정보는 연 1회 각 병과별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고 있으며 사전 반영되지 않은 외국대학 및 국내대학의 전공학과는 병과분류 진행 간 추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국방모집포털 홈페이지(m-recruit.mnd.go.kr) [커뮤니티]-[자료실]에 게시된 장교 병과 연계 전공 및 자격 기준은 학군·학사·간부사관 병과분류 시 적용 됩니다.**

Tip

- **육군규정 106 인력관리규정**(초임장교 병과분류)
  - 병과분류시 전공학과 우선순위 및 분류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은 인사사령부에서 매년 대학별 전공학과의 변화된 내용을 분석하여 병과분류 기준에 추가 하거나, 관련이 없는 학과를 삭제 조정하여 병과분류 기준을 보완한다.
  - 인사사령부는 병과분류 기준을 보완시 양성기관 및 각 병과로부터 병과분류 관련 조정소요를 확인한다.

11 전문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 병과(특기)분류 시 혜택이 있나요?

병과(특기)분류시 분류요소로 전공학과(복수전공 포함), 군 경력 및 보유 자격증, 양성기관 교육성적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지원하고자 하는 병과(특기)와 관련이 있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병과(특기) 분류시 적용이 됩니다.

☞ **인사사령부는 연1회 병과별 자격기준 반영소요를 검토하여 병과분류 기준을 보완**(육규 106 인력관리규정)

12 전공과 관련없는 병과(특기)에 지원해도 분류가 가능한가요?

지원하고자 하는 병과(특기)가 전공과 관련이 없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단, 병과별 공석 대비 지원자가 많을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분류 됩니다.

☞ **초임 장교 병과분류 : 전공·군경력 > 자격증 > 양성기관 성적 순 분류**
☞ **초임 민간부사관 특기분류 : 해당 특기 경력(전공·군경력), 자격증, 양성기관 교육성적 등 합산 고득점자 순 분류**

13 임관 후에 병과를 변경할 수 있나요?

육군에서는 병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분류하기 위하여 공개분류 후 개인 병과에 대한 임관 명령이 발령됩니다. 따라서 병과분류 후 병과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육군에서는 임관 후 군 복무 중 전과**(병과변경)**계획이 있을 경우 개인이 신청하여 선발시 병과 변경이 가능합니다.**
(전과계획은 병과별, 계급별 인력균형 유지와 인력운영계획을 고려 장기복무 인력이 부족한 병과에 대한 인력보충의 개념으로 실시함.)

14 학군·학사 초임장교의 '항공' 병과 분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양성교육 기관에서 임관 3개월 전 신체검사 결과, 교육성적, 체력, 어학, 심층면접결과 등 평가요소를 반영하여 선발하고, 선발결과를 병과분류에 반영합니다.

꿈과 미래를 향한 최고의 선택! 육군간부의 길을 알려드립니다.

제 7 장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

꿈과 미래를 향한 최고의 선택! 육군간부의 길을 알려드립니다.

Q&A 1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공통)

01 장기복무 / 복무연장 공석은 어떻게 결정 하나요?

>>>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인력계획과에서 연간 인력운영 소요를 기초로 장기복무/복무연장의 전체적인 공석을 판단한 후, 육군 인사사령부 인력획득계획과에서 지원자와 전체공석을 분석하여 부대별 위임 공석을 결정합니다.

☞ **인사참모부 인력계획과 : 임관연도별, 병과별 전체공석 판단**
☞ **인사사령부 인력획득계획과 : 지원자 현황과 전체공석을 비교 분석하여 임관연도별, 병과별, 위임심사부대별 공석 재판단**

Tip

- **육규 106 인력관리규정**(장기복무/복무연장 획득계획)
  - 목적 : 병과별 적정 진출률 유지, 소령/상사 정원 충족
  - 판단기준 : 임관연도별 대위 → 소령 진출률 고려 판단,
    중사 → 상사 진출률 고려 임관연도별, 병과별 판단

02 근무평정은 어떻게 반영 하나요?

>>> 장기복무/복무연장 선발시 근무평정은 임관 후 평가받은 전 기간 평정을 종합한 후, 평균 점수를 적용 합니다.

☞ **평가받은 모든 평정점수의 합을 평가횟수로 나누고**
☞ **근무평정 배점인 25~40점을 평가환산점수로 반영**
- 장교 장기복무 (2·3년차: 25점, 5년차 이상: 40점)
- 장교 복무연장 : 40점
- 부사관 장기복무 (3·4년차: 35점, 5년차 이상: 50점)
- 부사관 복무연장 : 40점

Tip

- **근무평정 점수 계산 "예"**(임관 3년차 장교 장기복무 지원시)
  - 평가받는 모든 평정점수의 합을 평가횟수로 나누기
    ※ 100점(2년차 전반기) + 99.6점(2년차 후반기) + 100점(3년차 전반기)
    + 98.8점(3년차 후반기) = 398.4점 ÷ 4(횟수) = 99.6
  - 획득점수에서 기본점수인 80점 제외한 점수를 배점인 4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 [(99.6 - 80) / 20] × 25(배점) = 24.5점

03 체력검정은 어떻게 반영 하나요?

>>> 장기복무 / 복무연장 선발시 체력검정 점수는 선발 당해연도 체력검정 계획을 적용합니다.

☞**체력검정 결과 반영 기준 : 임관 다음연도부터 선발 당해연도까지 합산 후 평균 적용**
- 전반기 장교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과 부사관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은 전년도 결과까지, 후반기 장교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은 당해연도 결과까지 적용하여 평가

☞**체력검정 미실시한 인원은 장성급 지휘관 책임하 심의위원회 운용,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인원 중 사유서 첨부시 공상처리 여부에 따라 1급 또는 3급 부여**

Tip

● **체력검정 점수반영**

종 목 별 배 점					점 수 반 영
등 급	윗 몸 일으키기	팔굽혀 펴기	3km 달리기	체력검정 총 점	점수
특 급	5점	5점	10점	20점	5점
1 급	4점	4점	8점	16~19점	4.9점
2 급	3점	3점	6점	12~15점	4.8점
3 급	2점	2점	4점	8~11점	4.7점
불합격	0점	0점	0점	불합격	3점
	* 1개 종목이라도 불합격시 전 종목 "0"점 처리				
미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실시				0점
미부여	일시보류 심의 결과 "미부여" 의결자				제외

● **미실시 인원 중 일시보류 심의 인원은 심의결과 반영**

●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연도' 체력검정 미실시자는 선발제외**

04 감점되는 요소와 선발 불가 사유가 정해져 있나요?

>>> 장기복무 / 복무연장 선발시 징계, 형사벌 등은 감점을 적용하며, 선발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인원들은 선발제외하고 있습니다.

Tip

● 말소기간 및 감점기준

구 분	징 계 벌					형 사 처 벌		보직 해임	보안 벌점
처분 종류	중징계		경징계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	①벌금형 ②벌금형 선고유예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				
말소 기간	9년	7년	5년	3년	2년	7년	2년	2년	3년
감점 기준	-6점	-5점	-4점	-3점	-2점	-5점	-3점	-	1점당 0.1점 (최대 2점)

● 성인지 교육 이수 여부 반영(미이수시 0.1점 감점)

● 선발 불가 사유

-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단, 약식명령의 청구에 의하여 유죄판결 받은 자 제외)
- 중징계 또는 3회 이상 경징계를 받은 자
- 필수(보수) 교육과정에서 낙제 또는 불명예스러운 사유로 교육이 중단된 자
- 현역복무부적합자로 보고된 자 중 심사위원회에서 확정된 자
- 부대평가서 평가자 2인 이상에게 "D(선발불가)"로 평가받은 자
- 성폭력 관련 및 음주운전 사고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 및 체력검정 미실시자
  * 휴직인원도 필히 신체검사 실시, 체력검정 일시보류자의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기록
- 마약 검사 후 "양성"으로 통보되어 전문기관에서 최종 마약중독으로 확정된 자 또는 마약 검사를 미동의하거나 결과 미제출자
- 기타 선발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 해당자

05 선발 간 별도의 가산점이 있나요?

>>> 장기복무/복무연장 선발 시 현재 장교 및 부사관은 '23.3.1. 이후 격오지 근무경력과 다자녀 직접양육자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고, 부사관은 전문학사 이상 학위, 임관 전 현역복무 경력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장교와 부사관 모두 격오지 / 접적지역 근무 경력 1개월 이상부터 근무 개월에 따라 가점 차등 적용하고 있음**

※ 다자녀 직접양육 가점은 2째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만 8세) 이하인 대위 이하 및 중'하사를 적용하고 있음

※ 세부 가점 점수는 당해연도 선발계획 참조

06 심사위원 질적평가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 장기복무/복무연장 선발 시 심사위원 질적평가는 장교는 5점, 부사관은 10점이 반영되며, 대상자별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고려하여 절대평가를 실시합니다.

☞ **긍정적 요소 : 근무평정, 부대추천, 부대평가 우수자 등**

☞ **부정적 요소 : 부대추천 / 부대평가 저조자, 처벌기록 有**

※ 세부 평가요소는 당해연도 선발계획 참조

07 휴직·후송·파견인원은 어디로 지원하나요?

>>> 장기복무/복무연장 선발 시 휴직·후송·파견인원은 원 소속부대로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 **부대평가, 부대추천, 면접평가도 원 소속부대 통제 하 실시**

08 장기복무 / 복무연장 선발되면 언제까지 근무할 수 있나요?

>>> 장기복무로 선발되면 장교는 10년을, 부사관은 7년을 의무복무해야 하며, 장교는 장기복무로 임명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해 1회 전역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속 복무를 희망 시 계급별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복무연장은 장교 / 부사관 모두 연장된 기간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 **복무연장 근무기간 : 임관일로부터 의무복무기간을 포함하여 장교는 10년, 부사관은 7년 초과 시 1년 단위로 심의를 통해 해 계급 정년까지 지원가능**

Tip

- **군인사법 7조 의무복무기간, 36조 정년전역**
  - 장기복무 의무복무기간 : 장교 10년, 부사관 7년
  - 정년전역 : 복무연장 인원은 연장된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

09 당해연도 전역예정자도 선발하나요?

>>> 장기복무 / 복무연장 선발시 당해연도 전역 예정자는 당해연도 선발계획에 따라 기준일을 선정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선발심의 및 임명명령 발령전 전역이 예정되어 있는 자는 지원자격을 미부여하고 있으며 그 후의 전역예정자는 임관연도별, 병과별 인력운영수준을 고려하여 매년 공석 판단 후 선발여부를 결정합니다.**

10 장기복무 / 복무연장 선발 후 취하(취소) 할 수 있나요?

>>> 장기복무로 선발되면 의무복무기간을, 복무연장으로 선발되면 연장된 기간만큼 복무해야 하며, 취하할 수 없습니다.

☞ **장기복무 / 복무연장으로 선발되어 공지된 이후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단, 선발심의 이전에는 취하 가능**

Q&A 2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장교)

01 장교 장기복무는 언제 선발하나요?

>>> 장교 장기복무는 매년 전반기에 임관 5년차 이상을 대상으로, 후반기에 임관 2·3년차를 대상으로 선발하고, 재임용자는 재임용 후 3개월 이상 복무자는 전·후반기 선발하며 세부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인사참모부 인력계획과에서 당해연도 획득소요(공석) 판단**

☞ **인사사령부 인력획득계획과에서 당해연도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전반기 선발은 전년도 12월 중, 후반기 선발은 8월 중 인트라넷에 공지 및 공문으로 하달**

Tip

● 장교 장기복무 선발계획

- 임관연차별 장기복무 선발 비율
  - * 임관 2년차(60±5%), 3년차(20±5%), 5~7년차(20±5%)
  - * 임관 4년차 미선발
- 선발 평가요소 / 배점 단위: 점

구 분	계	근무평정	교육성적			상훈	체력검정	부대평가	부대추천	면접평가	잠재역량	질적평가	가점
			소계	신임과정	대위과정								
임관 2~3년차	101.4	25	5	5	·	5	5	10	30	10	5	5	1.4
임관 5년차 이상	101.4	40	5	2	3	5	5	10	25	·	5	5	1.4

※ 가점 부여 : 격오지 근무경력(개월수 고려), 다자녀(2자녀 이상)

- 선발제대

구 분	2년차				3년차 이상 전원	여군 전원	해외 파병	위탁교 육생
	보병	기타 전투병과	전투병과 (육·국직)	기행·특수 병과				
제 대	사·여단	군단급 이상	육본(중앙)					

02 장교 복무연장은 어떻게 선발하나요?

>>> 장교 복무연장 선발은 연 2회(전·후반기) 임관 2년차 이상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 인사참모부 인력계획과에서 당해연도 획득소요(공석) 판단

☞ 인사사령부 인력획득계획과에서 당해연도 전·후반기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인트라넷에 공지 및 공문으로 하달

Tip

● **장교 복무연장 선발계획**

- 복무연장 선발시기 : 연 2회 (전·후반기)
  ※ 전반기(2~3월) / 후반기(11~12월) : 장기복무와 연계 하 선발
- 지원기간 : 연 단위로 지원 가능 (1년, 2년, 3년, 4년)
  ※ 임관일 기준 의무복무기간을 포함 10년 초과 금지
- 선발 평가요소 / 배점 단위: 점

구 분	계	근무평정	교육성적			상훈	체력검정	부대평가	잠재역량	질적평가	가점
			소계	신임과정	대위과정						
임관 2~3년차	101.4	40	5	5	·	5	5	35	5	5	1.4
임관 4년차 이상			5	2	3						

- 선발제대 : 육본(중앙) 선발

03 교육성적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 장교 장기복무 / 복무연장 선발시 교육성적은 신임장교 지휘참모과정, 대위 지휘참모과정 성적을 반영합니다.

☞ **신임장교 지휘참모 과정은 합·불제, 대위 지휘참모 과정은 교육평정, 23-1기 교육 수료자부터는 교육 성적을 등급별 환산점수 반영**

※ 임관 2~3년차 : 5점 (신임장교 지휘참모과정)

※ 임관 4년차 이상 : 5점 (신임장교 지휘참모과정 2점, 대위 지휘참모과정 3점)

- 지휘참모과정 미수료자는 근무평정, 상훈, 체력검정, 부대평가, 잠재역량 점수를 합산 후 교육성적 배점(3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Tip

● **교육성적 평가점수**

- 임관 2~3년차 (신임장교 지휘참모과정 5점) : 합격(5점), 불합격(4점)
- 임관 4년차 이상 (신임장교 지휘참모과정 2점, 대위 지휘참모과정 3점)

구 분		상(100%)	중상(95%)	중(90%)	하(80%)
신임장교 지휘참모 과정	'13년 이후	2점 (합격)	·	·	1.6점 (불합격)
대위 지휘참모 과정	'13년 이후	교육평정 점수 환산 적용			
	'23년 이후	교육성적 환산 적용			

04 상훈점수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 장교 장기복무 / 복무연장 선발시 상훈점수는 임관 후 수여 받은 표창 중 반기별 최상위 표창 1개를 반영합니다.

☞ 장성급 상장은 잠재역량 평가요소에 자격증 1개로 반영

Tip

• 표창 적용 기준

구 분		상(100%)	중상(95%)	중(90%)	하(80%)
표창점수	임관 2~3년차	1점 이상	0.8~1점 미만	0.5~0.8점 미만	0.5점 미만
	임관 4년차	2점 이상	1.2~2점 미만	0.8~1.2점 미만	0.8점 미만
	임관 5년차 이상	3점 이상	2~3점 미만	1~2점 미만	1점 미만
상훈 적용 점수		5점	4.75점	4.5점	4점

• 훈격별 표창 점수기준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참모총장/연합사령관 (장관급)	작전사령관급 (연합사 부사령관, 방사청장 포함) (차관급)	군단장급 (차관보)	사단장/여단장급 (1급 관리관)	대령급 지휘관	중령급 지휘관	소령급 지휘관
3점	2.5점	2.3점	2점	1.5점	1.2점	1점	0.5점	0.3점	0.2점

05 잠재역량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 장교 장기복무 / 복무연장 선발시 잠재역량 점수는 직무 관련 자격증과 장성급 상장을 계량화하여 적용합니다.

☞ **전투임무수행 및 직무수행관련 자격증, 장성급 상장 미구분 총 3개 이상 보유시 만점 적용**

구 분	A (100%)	B (98%)	C (96%)	D (84%)
배 점	5점	4.9점	4.8점	4.7점
자격증 보유	3개 이상	2개	1개	없음

Tip

• **평가요소**

구 분	평 가 요 소
자격화제도 전투임무수행 및 직무수행 분야 자격	• 인사관리제도과-342('22. 4.11.) '자격화제도 인사관리' 어학시험 기준 검토결과(통보)적용 * 영어 및 제 2외국어 분야 인정 기준과 유효기간(5년) 설정 • 병과별 전투임무수행 및 직무수행 분야 자격화 목록 최신화(전파) 참고 : 육본 홈페이지 - 인참부 홈페이지 - 인재관리 - 장교 / 준사관 인사관리 탑재 [자격화제도 지정 목록] 참고 * 동종의 자격은 1개로 통합 적용 예 1) 정보기술자격(ITQ) 관련 자격증 다수(ITQ 한글, ITQ 파워포인트, ITQ 엑셀, ITQ 엑세스 등) 보유 시 ITQ 자격증 1개로 적용 예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2·3급 다수 보유 시 자격증 1개로 적용 • 부대유형에 따라 취득하는 자격증 미적용 : 공수기본, 유격 등 • 공인기간 만료 또는 자격상실로 판정된 자격증 미적용 * 임관 전·후 취득하여 국방인사정보체계 인사자력으로 기록된 자격증만 인정
기 타	• 상장 수상 경력 (경연대회 포함) * 장성급 이상 상장 수상 기록만 반영(다수 수상기록을 보유하더라도 자격증 1개로 적용) • 경계작전부대 6개월 이상 근무경력 : 직접경계담당부대 근무자에 한함 *「 육규110 장교인사관리규정 」 제50조 3. 경계임무 참가형태 1등급 대상부대 (땅굴탐지작전 투입장교 제외) * 임관 후 수상한 상장 및 경계작전부대 근무경력만 인정

※ '20년 선발시부터 양성교육 과정의 기본 취득자격(공수기본, 유격), 과거 군 복무경력은 잠재역량 평가요소에 미반영

※ '21년 선발시부터 직접경계담당부대(GP·GOP·해/강안 중·대대 간부) 6개월 이상 근무경력을 '잠재역량 평가 시 1개의 자격'으로 인정

※ '23년 선발시부터 교육훈련우수부대 표창(선봉중대, 전술훈련평가, 전투력 측정) 수상자(필수직위 지휘관)는 '잠재역량 평가시 1개의 자격'으로 인정

06 부대평가서는 반영하나요?

장교 장기복무 / 복무연장 선발시 부대평가서는 1·2차 절대평가로 1차 평가자와 2차 평가자가 평가한 의견과 점수를 반영합니다.

☞ 평가내용 : 임무수행능력, 품성/품행(사생활), 장래 발전성, 종합의견 등
☞ 1·2차 평가자 : 1·2차 평정 계통도 준용(절대평가)

Tip

- 장기복무 선발 배점 : 10점
- 복무연장 선발 배점 : 35점

07 부대추천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장교 장기복무 선발시 부대추천 점수는 등급별로 배점을 적용하고 있으며, 복무연장 선발시에는 부대추천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등급별 배점

구 분	상(100%)	중상(95%)	중(90%)	하(80%)
임관 2~3년차	30점	28.5점	27점	24점
임관 5년차 이상	25점	23.75점	22.5점	20점

☞ 등급부여

※ 추천집단별 "상"층 30%로 제한, "중상"층 이하와 집단구성원이 1명일 경우에는 추천권자 재량

Tip

- 추천 기준일, 부대추천권자, 집단구성, 추천심의 등과 관련된 세부내용 : 당해연도 계획 참조

08 면접평가 대상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장기복무 지원자 중 임관 2·3년차 만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토론/개별)을 실시합니다. 복무연장 지원자는 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대상자별 100점 만점으로 절대평가 병과별 서열작성, 등급부여 후 환산된 배점 적용**

☞ **평가서열별 등급 / 배점(상대평가)** 단위 : 점

구 분	상 (서열 상위 30% 이내)			중상 (서열 31% ~ 60%)			중 (서열 61% ~ 100%)			하 (저조)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배 점	10	9.9	9.8	9.7	9.6	9.5	9.4	9.3	9.2	7

☞ **단계별 면접방법**

단 계	**대면면접 (토론·개별발표)**
중 점	국가관·사회성·이해력 등 종합적 행동 평가
평 가 요 소	국가 / 안보관, 표현력 / 논리성, 리더십 / 사회성, 이해 / 판단력 * 토론주제(상황) 사전 부여
방 법	1개조 10명 이하 편성, 조별 토론(조별 60분)
점 수	10점
면접위원	3명

※ 변경사항 : 대면 면접(토론 / 개별발표) 간 면접위원과 질의응답 없음

Tip ● **면접평가와 관련된 세부내용 : 당해연도 면접평가 시행 계획 참조**

Q&A 3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부사관)

01 부사관 장기복무는 언제 선발하나요?

>>> 부사관 장기복무 선발은 연 1회(7월) 임관 3년차 이상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 **인사참모부 인력계획과에서 당해연도 획득소요(공석) 판단**

☞ **인사사령부 인력획득계획과에서 4월 중 인트라넷에 공지, 공문으로 계획하달**

Tip

● **부사관 장기복무 선발계획**

- 장기복무 선발비율

구 분	임관 3년차	임관 4년차	임관 5~7년차
선발 비율	40±5%	40±5%	20±5%

- 선발 평가요소 단위: 점

구 분	계	근무평정	교육성적	상훈	체력검정	부대추천	부대평가	잠재역량	면접평가	심의위원질적평가	가점
3·4년차	103.9	35	5	5	5	15	10	5	10	10	3.9
5년차 이상		50				10			·		

※ 가점 부여 : 학위(전문학사 이상), 임관 전 군 복무경력(개월수 고려), 격오지 근무경력(개월수 고려), 다자녀(2자녀 이상)

- 선발제대

구 분	전투병과 남군				기타 인원		여군, 특수
	보병,포병, 기갑	기타 전투,일부 기술·행정, 특수병과	전투 (육·국직)	기행	전투	기행	
제 대	사·여단	작전(기능)사, 군단	육본(중앙)				

※ 특전보병(여군포함)은 특전사 위임선발, 특수정보 지원자는 정보사 위임선발

02 부사관 복무연장은 어떻게 선발하나요?

>>> 부사관 복무연장 선발은 연 1회(7월) 임관 3년차 이상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 **인사참모부 인력계획과에서 당해연도 획득소요(공석) 판단**

☞ **인사사령부 인력획득계획과에서 4월 중 인트라넷에 공지, 공문으로 계획 하달**

Tip

● **부사관 복무연장 선발계획**

- 복무연장 선발시기 : 연 1회(7월)
- 지원기간 : 연 단위로 지원 가능(1년, 2년, 3년)
  ※ 임관일 기준 의무복무기간 포함, 7년 초과 시 해 계급 연령정년까지 1년 단위로 지원가능
- 선발 평가 요소 단위 : 점

구 분	계	근무평정	교육성적	부대평가	상훈	체력검정	잠재역량	심사위원 질적 평가	가점
배 점	103.9	40	5	30	5	5	5	10	3.9

※ 가점 부여 : 학위(학사, 전문학사 등), 임관 전 군 복무경력(개월 수 고려), 격오지 근무경력(개월 수 고려), 다자녀(2자녀 이상)

- 선발제대 : 육본(중앙) 선발

03 교육성적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 부사관 장기복무 / 복무연장 선발시 교육성적은 초급리더과정, 중급리더과정 성적을 반영합니다.

Tip

● **교육성적 산정기준**

구 분	평가방법	상	중
초급리더과정	**합 · 불제**	합격	불합격
중급리더과정	**합 · 불제**	합격	불합격

● **교육성적 평가산점수**

- 장기복무 / 복무연장 (5점)

구 분	상(100%)	중(90%)
초급리더 과정	2점	1.8점
중급리더 과정	3점	2.7점

※ 초·중급리더과정 미수료자 : 근무평정, 상훈, 체력검정, 잠재역량 점수를 합산 후 교육성적 배점(2점 또는 3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04 상훈점수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 부사관 장기복무 / 복무연장 선발시 상훈점수는 임관 후 수상한 표창 중 반기별 최상위 표창 1개를 반영합니다.

☞ **상장은 잠재역량 평가요소 중 자격증으로 반영**

Tip

● **표창 적용 기준**

구 분		상(100%)	중상(95%)	중(90%)	하(80%)
표창 점수	3·4년차	2점 이상	1.5~2점 미만	1~1.5점 미만	1점 미만
	5년차 이상	4점 이상	3.5~4점 미만	3~3.5점 미만	3점 미만
상훈 적용 점수		5점	4.75점	4.5점	4점

● **훈격별 표창 점수기준** ( ) : 공무원직급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장관급 이상)	합참의장, 참모총장, 지작사, 2작사 사령관 (연합사부사령관, 방사청장 포함) (차관급)	군단장 (차관보)	사·여단장 (1급 관리관)	대령급 지휘관	대대장	중대장
5점	4점	3점	2점	1점	0.8점	0.2점

※ 장성급 상장은 잠재역량 평가요소에 자격증 1개로 반영

05 잠재역량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 부사관 장기복무 / 복무연장 선발시 잠재역량 점수는 자기개발(자격증), 사·여단장급 이상 장성급 상장 점수를 적용합니다.

☞ **자기개발 : 자격화제도 반영 자격증, 기타 항목을 적용하여 개수에 따라 점수 부여**

※ 3개이상 항목 해당시 만점(5점) 부여

구 분	A	B	C	D
배 점	5점	4.9점	4.8점	4.7점
항목수	3개 이상	2개	1개	없음

Tip

● **자기개발**(자격증, 기타) **평가요소**

구 분	평 가 요 소
자격화제도 전투임무수행 및 직무수행 분야 자격	• 인사관리제도과-342('22. 4.11.) '자격화제도 인사관리' 어학시험 기준 검토결과(통보)적용 ＊ 주요 개선내용 - 영어 및 제 2외국어 분야 인정 기준과 유효기간(5년) 설정 • 병과별 전투임무수행 및 직무수행 분야 자격화 목록 최신화(전파) 참고 : 육본 홈페이지 - 인참부 홈페이지 - 인재관리 - 장교 / 준사관 인사관리 탑재 [자격화제도 지정 목록] 참고 ＊동종의 자격은 1개로 통합 적용 예 1) 정보기술자격(ITQ) 관련 자격증 다수(ITQ 한글, ITQ 파워포인트, ITQ 엑셀, ITQ 엑세스 등) 보유 시 ITQ 자격증 1개로 적용 예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2·3급 다수 보유 시 자격증 1개로 적용 • 공인기간 만료 또는 자격상실로 판정된 자격증 미적용 ＊ 임관 전·후 취득하여 국방인사정보체계 인사자력으로 기록된 자격증만 인정
기 타	• 상장 수상 경력 (경연대회 포함) ＊장성급 이상 상장 수상 기록만 반영 (다수 수상기록을 보유하더라도 자격증 1개로 적용) • 인사관리제도과-908('20.7.14.) '경계작전 항상을 위한 인사관리 개선 지시'에 의거 경계작전부대 6개월 이상 근무경력 : 1개의 자격으로 평가 ＊직접경계작전담당부대 근무자 (땅굴탐지작전 투입부사관 제외) ＊ 임관 후 수상한 상장 및 경계작전부대 근무경력만 인정

※ '21년 선발시부터 직접경계담당부대 (GP • GOP • 해/강안 중 • 대대 간부) 6개월 이상 근무경력을 '잠재역량 평가시 1개의 자격'으로 인정

06 부대 평가서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 부사관 장기복무 / 복무연장 선발시 부대 평가서 점수는 부대유형에 따라 1~4차 평가권자가 부여한 등급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 '21년 선발시부터 부대평가서 평가자 중 • 소대장 추가 및 배점 조정

☞ **평가내용 : 임무수행능력, 품성/품행(사생활), 장래 발전성, 종합의견 등**
☞ **평가자 : 부대 유형에 따라 평가자 1~4명 지정**

Tip

- **작성 기준일 : 당해연도 선발계획 참조**
- **평가유형 구분**

유형	평가권자	제대별 부대평가 유형
A형	4명	중대급 / 대대·여단(대령급) / 사·여단(장성급) / 군단 참모부 근무자
B형	2명	육본 및 작전사급 참모부 근무자

- **1 ~ 4차 평가자**

구 분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3차 평가자	4차 평가자
중대급	소대장	중대장	대대 주임원사	대대장
대대급(참모부)	선임장교	작전과장	대대 주임원사	대대장
여단급(참모부)	선임장교	부서장(과장)	여단 주임원사	여단장
사·여단 참모부	선임장교	부서장(참모)	주임원사	참모장
군단 참모부	해당 과장	처장(참모)	주임원사	참모장
육본/작전사급 참모부	해당 과장	부서장(처·차장)	·	·

- **등급별 점수**
  - **장기복무 (10점)**

구 분		A(탁월 / 100%)	B(보통 / 95%)	C(저조 / 90%)	D(선발불가)
A형 (평가자 4명)	1 • 2차 평가자	2점	1.9	1.8	0
	3 • 4차 평가자	3점	2.85	2.7	0
B형 (평가자 2명)	1차 평가자	5점	4.75	4.5	0
	2차 평가자	5점	4.75	4.5	0

  - **복무연장 (30점)**

구 분		A(탁월 / 100%)	B(보통 / 95%)	C(저조 / 90%)	D(선발불가)
A형 (평가자 4명)	1 • 2차 평가자	5점	4.75	4.5	0
	3 • 4차 평가자	10점	9.5	9	0
B형 (평가자 2명)	1차 평가자	15점	14.25	13.5	0
	2차 평가자	15점	14.25	13.5	0

07 부대 추천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 부사관 장기복무 선발시 부대 추천 점수는 등급별로 배점을 적용하고 있으며, 복무연장 선발시에는 부대 추천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등급별 배점**

구 분		상 (100%)	중상 (95%)	중 (90%)	하 (80%)
배 점	3·4년차	15점	13.5점	12점	10.5점
	5년차 이상	10점	9점	8점	7점

☞ **등급부여**

※ 추천집단별 “상”층 30%로 제한, “중상”층 이하, 1/1 대상자(중상, 중, 하)는 추천권자 재량

※ “상”층 인원 포함, “중상”층 이하 전 인원에 대한 서열 부여

Tip

- **추천 기준일, 부대추천권자, 집단구성, 추천심의 등과 관련된 세부내용 : 당해연도 계획 참조**